

2023 **금속노조** 13기

조합·지부·지회 임원 동시선거

실무 **지침서**

2023년 민주노총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 직접선거 및
16개 지역본부 본부장·수석부분부장·사무처장 직접선거도 포함

2023 **금속노조** 13기

조합·지부·지회 임원 동시선거



이 지침서는 금속노조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 그리고 민주노총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에 근거하여 금속노조 및 민주노총 선거관리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본 실무지침서와 선거관리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한 판단은 금속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에 따릅니다.

※ **금속노조 선거관리규정 부칙 2조(해석)** 본 규정의 미비점은 통상 관례에 의하되 다툼의 소지가 있을 때는 중앙선거관위 해석이 우선한다.

2023. 9. 20.

■ 금속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소속	직책	이름
경기지부(현대케피코지회)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서태옥
경남지부(대우조선지회)	중앙선거관리위원	이성원
광주전남지부(금호타이어지회)	중앙선거관리위원	임성진
기아차지부	중앙선거관리위원	배윤호
한국지엠지부	중앙선거관리위원	차현호
현대차지부	중앙선거관리위원	김수석

■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가맹조직	직책	이름
건설산업연맹	사무처장	김금철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	박해철
공무원노조	조직실장	진강필
금속노조	총무실장	강지현
보건의료노조	전략조직위원장	김경규
사무금융노조	부위원장	오희정
서비스연맹	부위원장	이선규
언론노조	해럴드지부장	이재원
전교조	부위원장	문병모
화섬식품노조	수석부위원장	신귀섭
서울본부	보건의료노조 여의도성모병원지부장	우상국
경기본부	수석부본부장	한규협
인천본부	회계감사	방영일
강원본부	수석부본부장	유찬봉

■ 금속노조 중앙선거관리 실무 지원 ■

소속	직책	이름
조합	총무국장	김상민
조합	총무국장	안민지

■ 기획사 : 새날 02-2279-7685

웹하드 : www.webhard.co.kr 아이디 : saenal3 / 비번 : toskf(한글로 새날)

지침서 목차

2023년 조합-지부-지회 및 민주노총 동시선거 일정 개요	6
2023 동시선거 개요	7
2023 동시선거 선거권과 피선거권	8
2023 동시선거 투표방법 개요	10
금속노조 조합·지부·지회 및 민주노총 선거일 수립	12
지부·지회(분회 및 위원회 포함) 별 투표구·투표소 구분	14
지부·지회 등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5
2023 동시선거 선거인명부	17
일정별로 보는 선거실무업무_선거일 전 (前)까지 _선거운동관리 외	22
후보자 선거운동 관리	39
투표기간 선거관리 업무	49
현장투표의 개표관리 업무	54
당선인의 결정	58
[부록] 금속노조 선거관리규정	61

2023년 조합지부지회 및 민주노총 동시선거 일정 개요

날짜	내용
8.28(월)	금속노조-민주노총 동시 선거인명부 취합 및 등록 시작 민주노총 투표구 관할 지역본부 조정신청 시작
9.13(수)	민주노총 투표구 관할 지역본부 조정신청 마감
9.18(월)	금속노조 147차 중앙위원회, 조합 13기 동시선거일 결정
9.22(금)	민주노총 선거일정 공고 금속노조-민주노총 동시 선거인명부 취합 및 등록 마감일
9.25(월)	금속노조-민주노총 동시선거 안내 메시지 발송 사전안내 시작 권리제한 목록 취합 시작 지부 지회 각급 조합-지부-지회 및 민주노총 각 투표 방법 결정 시작 지부 지회 각급 선관위(투표구·투표소 선관위원·투표사무원) 명단 제출 시작
10.5(목)	금속노조 조합원에 금속노조-민주노총 동시선거 안내 메시지 발송 금속노조-민주노총 동시 선거인명부 명부 보정 시작
10.19(목)	권리제한 목록 취합 마감
10.20(금)	금속노조 총회소집 및 임원선거 공고
10.23(월)	지부 지회 각급 조합-지부-지회 및 민주노총 투표 방법 확정 마감
10.26(목)	민주노총 및 민주노총 지역본부 후보자 등록 완료와 후보자 확정공고
10.28(토)	신규 조합원 및 조합비 체납 조합원 조합비 납부 마감일(14시까지)
10.30(월)	금속노조 조합 및 지부 임원 후보 등록 마감일(14시까지) 금속노조-민주노총 동시 선거인명부 명부 보정 마감일 및 열람 개시(1522-2220 안내병행) 지부 지회 각급 선관위(투표구·투표소 선관위원·투표사무원) 명단 제출 마감일 민주노총 및 민주노총 지역본부 후보자 선거공보물 파일 제출 마감일
10.31(화)	금속노조 조합 및 지부 임원 후보자 확정공고 금속노조-민주노총 동시 선거인명부 명부 이의제기 및 정정 시작 민주노총 현장투표소 세부 일시·장소 보고 시작
11.1(수)	금속노조 조합-지부 임원 후보자 선거공보물 파일제출 마감(14시까지)
11.7(화)	금속노조 조합-지부 임원 후보자 선거공보물(2차) 파일제출 마감(14시까지)
11.8(수)	민주노총 현장투표소 세부 일시·장소 보고 마감일
11.10(금)	금속노조-민주노총 동시 선거인명부 명부 이의제기 마감일(18시까지)
11.13(월)	금속노조-민주노총 동시 선거인명부 최종 확정일(14시까지) ※ 이후 어떤 수정도 불가
11.14(화)	단위조직마다 현장투표 선거인명부 출력 또는 복사 등 선거 준비
~	단위조직마다 현장투표 투표함 및 투표 도구 준비 등 선거 준비
11.20(월)	단위조직마다 현장투표 투표용지 배부 완료 및 준비 등 선거 준비
금속노조 민주노총 1차 투표기간_ 11.21(화) ~ 11.24(금) / 민주노총 1차 추가 현장투표기간_ ~ 11.27(월)	
금속노조 2차 투표기간_ 12.04(월) ~ 12.07(목) / 민주노총 2차 투표기간_ 12.9(월) ~ 12.14(목)	
금속노조 3차 투표기간_ 12.18(월) ~ 12.21(목)	

금속노조 조합원은 금속노조-민주노총 동시선거를 이에 따라 진행합니다

2023 동시선거 개요

선출대상

- 금속노조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
- 금속노조 여성할당 부위원장 1명 ▪ 비정규할당 부위원장 1명 ▪ 일반 부위원장 5명
- 금속노조 ○○지부 지부장·수석부지부장·사무국장 ▪ 금속노조 ○○지부 부지부장
- 민주노총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
- 민주노총 ○○지역본부 본부장·수석부본부장·사무처장
- 민주노총 ○○지역본부 △△지역지부 임원 (일부에 해당)
- ○○지회 지회장 및 지회 임원

후보등록기간

- 민주노총 중앙 및 지역본부 임원
2023년 10월 22일(일) 09:00 ~ 10월 26일(목) 14:00
- 금속노조 조합 및 지부 임원
2023년 10월 23일(월) 09:00 ~ 10월 30일(월) 14:00 (단, 기업지부의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각 지회 지회장 및 지회 임원 (기업지부도 포함될 수 있음)
자체 규정 및 규칙, 또는 세칙에 의거함

선거운동기간

- 민주노총 중앙 및 지역본부 임원
2023년 10월 26일(목) 24:00 ~ 11월 20일(월) 24:00
- 금속노조 조합 및 지부 임원
2023년 10월 30일(월) 14:00 ~ 11월 20일(월) 24:00 (단, 기업지부의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각 지회 지회장 및 지회 임원 (기업지부도 포함될 수 있음)
자체 규정 및 규칙, 또는 세칙에 의거함

2023 동시선거 선거권과 피선거권

금속노조 규약

제13조(조합원의 권리 제한)

1. 조합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 ① 2개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단, 제15조 제6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기금운영 규정 31조, 32조, 46조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 ③ 조합의 징계 처분 및 회의 불참으로 권리 제한된 경우.

금속노조 선거관리규정

제14조(선거권)

1. 조합비를 체납한 조합원의 경우는 후보 등록 마감 48시간 전까지 조합비를 납부한 경우에 한 해 선거권을 부여한다.
2. 조합비가 가압류되거나 체불된 경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으로 조합 임원 및 지부 임원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선거권 제한)

1. 최초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조합원일지라도 선거인명부 최종확정일 기준으로 조합비를 2개월 이상 미납했을 경우, 징계로 인해 권리가 제한된 경우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선거공고일 이후 가입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으며, 선거공고일 전 30일 이내에 가입한 신규조합원은 선거인명부 최종확정일을 기준으로 1회의 조합비를 납부해야 선거권이 부여된다.

제16조(피선거권의 제한) 규약에 따라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1. 조합 임원이 연임(2회)한 뒤, 지부 임원이 재연임(3회)한 뒤 연속해서 해당 단위에 임원으로 출마하는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아래 2항 생략)
3. 조합비 2개월 이상 미납.
4. 징계처분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중지된 경우.
5. 징계처분 시 자격정지가 병과된 경우 (아래 6항 생략).
7. 임원은(조합, 지부, 지회) 당선 이후 6개월 동안 특별한 사유 없이 조합에서 결정한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차기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단, 차기 임원선거(조합, 지부, 지회)에 한한다.
8. 임기 중 소속사업장 기준으로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사업장에 소속되지 않은 조합원은 법정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단, 사업장 단체협약으로 정년 후 임기를 보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민주노총 선거관리규정

선거관리규정 제19조(선거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은 선거권을 제한한다.

2. 가맹조직의 규약규정·의결에 의한 징계처분이나 권리제한 조치 등으로 권리가 제한된 경우

선거관리규정 제20조(피선거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은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2. 가맹조직의 규약규정·의결에 의한 징계처분이나 권리제한 조치 등으로 권리가 제한된 경우
4. 가입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규조합원

금속노조 147차 중앙위 [선거권자 확정일]

- 이번 조합 13기 동시선거 선거권자는 2023년 10월 19일(목) 현재 조합에 가입된 이로 한다. 단, 권리 제한자는 제외.
- 9월 20일(수) ~ 10월 19일(목) 신규 가입자와 조합비(산별기금 납부 및 기금반환 의무 이행 포함) 체납(2개월 이상) 조합원 모두 10월 28일(토) 14시까지 조합비를 납부한 경우에 한해 선거권을 부여한다.
- 선거인명부 이의제기 시한은 11월 10일(금) 18시로 하여 11월 13일(월) 14시에 선거인명부를 최종 확정한다.

2023년 금속노조 중앙산관위 해설 및 지침

- 금속노조 조합비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선거권·피선거권을 제한합니다. 단, 금속노조 중앙위원회에서 납부유예가 승인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미납 조합비 납부 마감 시한은 금속노조 조합비 통장 납부 기준 10월 28일(토) 14시로 하며, 이 시점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 조합비가 미납된 조합원에게는 선거권·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미납 조합비란, 일반 조합비 외에도 산별기금, 신분보장·장기투쟁대책 기금 반환 의무 이행 모두를 포함합니다.
- 금속노조 징계로 인한 제명자 및 정권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모두 없습니다. 단, 금속노조 징계 중 정권자의 경우 그 기간이 10월 27일(금)까지(미납 조합비 납부 마감 시한 전날)인 경우 선거권이 있으며, 그 기간이 10월 19일(목)까지(선거공고일 전날)인 경우 피선거권까지 있습니다.
- 금속노조 선거공고일인 10월 20일(금) 이후 가입한 조합원은 선거권·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으며, 해당일인 10월 20일(금) 가입 조합원도 선거권·피선거권이 없습니다. 9월 20일 ~ 10월 19일 사이에 가입한 신규조합원은 1회의 조합비(산별기금 포함)를 내면 선거권·피선거권을 모두 부여하며 그 납부 마감 시한도 10월 28일(토) 14시로 합니다.
- 선거인명부 이의제기 시한은 11월 10일(금) 18시로 하여 11월 13일(월) 14시에 선거인명부를 최종 확정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이 시점 이후부터 일체의 명부 수정은 불가합니다.
- 금속노조 선거권자와 민주노총 선거권자는 정확히 일치합니다. 또한 이 선거권자는 각 지부 및 지회 선거권자와도 정확히 동일합니다. 단, 금속노조 선거권이 있음에도 금속노조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경우는 금속노조 선거관리규정 제16조에 따르며, 금속노조 선거권이 있음에도 민주노총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민주노총 선거관리규정 제20조에 따릅니다.

2023 동시선거 투표방법 개요

금속노조 선거관리규정

제32조(투표 방법)

1. 투표는 직접, 비밀, 무기명으로 한다.
2. 현장투표와 온라인(ARS투표, 모바일) 투표, 우편투표를 병행할 수 있다.
3. 온라인(모바일, ARS) 투표, 부재자투표를 제외한 우편투표의 경우,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금속노조 147차 중앙위 [투표방법 확정일]

- 이번 조합 13기 동시선거 투표를 온라인(ARS·모바일) 또는 우편투표로 진행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지부 및 지회 각각의 의결 단위 결의를 전제로 10월 24일(화)까지 조합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단, 우편투표는 구속자, 현장투표 부재자 중 ARS·모바일 투표 불가능자에 한한다.

2023년 금속노조 중앙선거관리 해설 및 지침

현장투표

: 각 지회(위원회 및 분회 포함)가 공지한 일시·장소에 조합원이 직접 방문해 본인확인 서명 뒤 투표용지에 기표.

- 금속노조·금속노조 지부·금속노조 지회 각 선거는 본 현장투표로 통일적으로 동시 진행함이 원칙입니다.
- 민주노총 선거의 경우 선거인 수(투표소 기준)가 11인 이상이어야 현장투표가 가능합니다.
민주노총 선거를 현장투표로 진행하려는 각 지회(위원회 및 분회 포함)는 세부 투표소별 선거관리명단 또는 투표사무원 명단과 세부 투표소별 세부 투표 일시 모두 금속노조를 통해 민주노총에 보고되어야 하며, 어느 것 하나라도 집행되지 못할 시 모바일 투표방식으로 강제 전환되며 이때 선거인명부에 휴대전화번호가 없는 경우 민주노총 선거에 한해 재적에서 제외됩니다.
- 민주노총(본부 동시) 선거의 현장투표는 민주노총 지역본부가 배부한 선거인명부뿐만 선거를 치를 수 있고, 금속노조(지부 동시) 및 지회(기업지부 포함) 선거의 현장투표는 각 지부가 파일로 배부한 명부를 각기 출력해 선거를 치룹니다.
- 민주노총(본부 동시) 선거의 현장투표는 민주노총 지역본부가 배부한 투표함으로만 선거를 치를 수 있고, 금속노조(지부 동시) 및 지회(기업지부 포함) 선거의 현장투표는 지회(기업지부 포함)가 자체 마련한 투표함으로 선거를 치룹니다.

- 민주노총(본부 동시) 선거의 현장투표는 민주노총 지역본부가 배부한 투표용지로, 금속노조(지부 동시) 선거의 현장투표는 지부가 배부한 투표용지로, 지회(기업지부 포함) 선거의 현장투표는 각 기 마련한 투표용지로 선거를 치룹니다.

전자투표-모바일투표

: 금속노조(민주노총)가 보낸 모바일 메시지 속 인터넷주소(URL)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기표. 단, 금속노조 조합원에 대해 투표 기간 4일간 매일 모바일 메시지를 발송함 (투표 완료자는 다음 모바일 메시지 발송 시 자동으로 제외).

- 금속노조·금속노조 지부·금속노조 지회 각 선거는 현장투표로 통일적으로 진행함이 원칙이므로 모바일 투표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10.23.(월)까지 금속노조에 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단, 모바일 투표 진행 시 금속노조 동시선거 취지에 맞게 금속노조·금속노조 지부·금속노조 지회 모두 통일적인 모바일 투표를 하려는 경우만 허용하며, 모바일 투표기간은 무조건 4일간으로 통일됩니다.
- 민주노총 선거만 모바일 투표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별도 내부 승인 절차는 없고 10.23.(월)까지 금속노조를 통해 민주노총에 보고되기만 하면 됩니다.
- 각 지회(기업지부 포함), 금속노조(지부 동시), 민주노총(본부 동시) 등 세 종류의 선거를 같은 4일간 모두 모바일 투표로 진행하려 할 경우, 모바일 투표 문항이 민주노총(본부 동시)→금속노조(지부 동시)→각 지회(기업지부 포함) 등의 순으로 구성됨을 사전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ARS투표

: 금속노조(민주노총)의 안내전화를 받아 그 안내에 따라 본인인증 및 기표. 단, 금속노조 조합원에 대해 금속노조 투표 기간인 4일간 매일 안내전화를 함 (투표 완료자는 다음 안내전화 시 자동으로 제외).

- 그 외 위 모바일 투표와 동일합니다.

우편투표

: 금속노조 각 지부 또는 민주노총이 사전에 우편으로 보낸 투표용지에 기표하여 우편회송.

- 금속노조·금속노조 지부·금속노조 지회 각 선거는 본 현장투표로 통일적으로 진행함이 원칙이므로 우편투표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10.23.(월)까지 금속노조에 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우편투표는 △구속자 △현장투표 기간에 부재자인 이 중 ARS 및 모바일 투표마저 불가능한 이 등 두(2) 경우에 한합니다.
- 이 중 금속노조(지부 동시) 선거의 우편투표 용지 발송은 금속노조 중앙선관위 지침을 받아 금속노조 각 지부선관위가 실시하고, 민주노총(본부 동시) 선거의 우편투표 용지 발송은 민주노총이 실시합니다.

금속노조 조합·지부·지회 및 민주노총 선거일 수립

금속노조 선거관리규정

제6조(선거일 및 공고)

1. 각급 대표자의 선거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민주노총 2023-2차 중앙위

- 본선 투표일 : 2023년 11월 21일(화) ~ 11월 27일(월)
- 결선투표일 : 2023년 12월 10일(일) ~ 12월 14일(목) / 단, 금속노조는 12월 11일(월) ~ 12월 14일(목)으로 함
 - ※ 민주노총 선거 투표일은, 민주노총이 정한 투표기간 중에서 가맹조직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금속노조는 결선투표일에 한해 이처럼 정함(민주노총 결선투표는 과반투표를 전제로 하지 않음).

금속노조 147차 중앙위

- 조합 13기 동시선거 1차 투표기간을 2023년 11월 21일(화) 06:30 ~ 11월 24일(금) 17:00로 한다.
- 조합 13기 동시선거 2차 투표기간을 2023년 12월 04일(월) 06:30 ~ 12월 07일(목) 17:00로 한다.
- 조합 13기 동시선거 3차 투표기간을 2023년 12월 18일(월) 06:30 ~ 12월 21일(목) 17:00로 한다.
- 지부 임원 선거 보충선거일의 투표기간은 조합 13기 동시선거 2차 투표기간 또는 3차 투표기간으로 한다.
- 부득이한 사유로 위 일정을 선거일로 하지 않는 지부 및 지회는, 각각의 의결 단위 결의를 전제로 조합 13기 동시선거 선거공고일인 10월 20일(금) 전까지 조합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2023년 금속노조 중앙선거위원회 해설 및 지침

- 동시선거란, 금속노조 임원, 금속노조 각 지부 임원, 민주노총 중앙 임원, 민주노총 지역본부 임원, 민주노총 지역본부 산하 지역지부 임원(일부에 해당), 그리고 지회 및 기업지부 임원 선거까지 하나의 똑같은 선거인명부로 진행되는 선거를 말합니다.
- 우선, 금속노조 소속 기업지부 또는 각 지회(분회 및 위원회)는 각기 의결로 아래 민주노총·금속노조 동시선거 기간 중 택해 자체 선거의 투표 일정을 투표방법을 고려해 정해야 합니다. 이때 전자투표 채택의 경우 무조건 4일 전제 기간으로 해야 합니다.

기간	현장 투표로 진행할 경우	전자 투표로 진행할 경우
11월 21일(화)~11월 24일(금)	1일~4일 중에서 택	무조건 4일 전체기간으로 정함
11월 25일(토)~11월 27일(월)	1일~3일 중에서 택	전자투표는 불가함
12월 04일(월)~12월 07일(목)	1일~4일 중에서 택	무조건 4일 전체기간으로 정함
12월 11일(월)~12월 14일(목)	1일~4일 중에서 택	무조건 4일 전체기간으로 정함
12월 18일(월)~12월 21일(목)	1일~4일 중에서 택	무조건 4일 전체기간으로 정함

- 위 기간 및 방침에 부합하게 자체 선거를 진행하지 못하는 곳은, 지부를 통해 조합에 공문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조합에 보고되는 시한은 10월 16일(월) 18시까지로 합니다. 그 외는 모두 동시선거로 봅니다.
- 이 선거에서 금속노조 동시선거 및 단일노조 취지상 지회(분회 및 위원회) 선거의 투표방법과 금속노조(지역지부 동시) 투표방법은 동일 해야 합니다(단, 금속노조 선거 투표기간이 아닌 아래 ④의 경우만 예외로 합니다). 민주노총 선거의 투표방법만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회(기업지부 포함) 자체 선거의 투표 일정 및 투표 방법과 연계해 아래 각 경우만 가능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선거의 투표일을 정해야 합니다.

번호	지회(기업지부) 자체 투표	금속노조 투표 (지부 동시)	지회(기업지부포함) 자체 투표방법	민주노총 투표 (본부 동시)
①	11/21(화)~11/24(금) 중 시행	1차 현장투표 (1일~4일 중 택)	현장투표 (1일~4일 중 택)	1차 현장투표 (1일~4일 중 택)
		1차 현장투표 (1일~4일 중 택)	현장투표 (1일~4일 중 택)	1차 전자투표 (4일 전체 기간임)
		1차 전자투표 (4일 전체 기간임)	전자투표 (4일 전체 기간임)	1차 전자투표 (4일 전체 기간임)
②	11/25(토)~11/27(월) 중 시행	×	현장투표 (1일~3일 중 택)	1차 현장투표 (1일~3일 중 택)
③	12/04(월)~12/07(목) 중 시행	1차 투표방법과 동일	금속노조 투표방법과 동일	×
④	12/11(월)~12/14(목) 중 시행	×	현장투표 (1일~4일 중 택)	1차 투표방법과 동일
		×	전자투표 (4일 전체 기간임)	1차 투표방법과 동일
⑤	12/18(월)~12/21(목) 중 시행	1차 투표방법과 동일	금속노조 투표방법과 동일	×

* 현장투표의 경우 해당 기간 내 하루 내지 전체기간 모두 중에서 정할 수 있음.

* 전자투표의 경우 무조건 해당 기간 전체(4일)가 투표일임.

- 각 지회(기업지부 포함) 선거 투표일, 금속노조(지부 포함) 선거 투표일, 민주노총(지역본부 포함) 선거 투표일 및 투표방법 모두가 아래와 같이 금속노조에 보고되는 시한은 10월 23일(월) 18시입니다.

지부	단위 조직	투표구	투표소	선거인수	투표방법 / 투표일						
					지회 선거 (분회·위원회 포함)		금속노조 선거 (지역지부 동시)		민주노총 선거 (지역본부 동시)		
					투표방법	투표일	투표방법	투표일	투표방법	투표일	

민주노총 현장 투표의 세부적인 일시(몇시부터 몇시까지 식) 및 장소(정문, 뱃층 식)까지 금속노조에 모두 보고되는 시한은 11월 8일(수) 18시까지입니다.

모든 보고 시한 중 어느 하나라도 지키지 못할 시 민주노총 현장투표에 한해 모바일 투표로 강제 전환되며 선거인명부 상 휴대전화번호가 없을 시 민주노총 재적에서는 제외됨을 유의바랍니다.

지부·지회(분회 및 위원회 포함) 별 투표구·투표소 구분

민주노총 선거관리규정 요약

[단위조직]

금속노조 각 지회(위원회 및 분회 포함)를 말한다

- △△지역지회 □□분회 또는 □□현장위원회 각각도 단위조직으로 분류한다.
- 현대차지부 1공장 위원회, 2공장 위원회, ... 각각도 단위조직으로 분류한다.
- 현대차지부 판매위원회 강원지회, 현대차지부 판매위원회 경남지회, 현대차지부 판매위원회 인천지회, ... 각각도 단위조직으로 분류한다.

[투표구]

일반적으로 단위조직과 투표구는 같다.

하지만, 단위조직이 2개 이상의 민주노총 지역본부 관할로 나뉘질 경우 투표구를 나눈다.

- △△지부 □□지회(경기), △△지부 □□지회(대전) = 각각 투표구로 나눈다.

[투표소]

하나의 투표구 내에서 현장투표함 설치 장소가 다를 경우 각각을 투표소로 나눈다.

- 부서, 지점, ○층, □식당 등.

하나의 투표구 내에서 투표방법을 달리하는 선거인마다 각각을 투표소로 나눈다.

- 현장투표자 = 1투표소 / 모바일 투표자 = 2투표소 / 우편투표자 = 3투표소

[10인 이하 단위조직·투표구·투표소]

- 단위조직 인원이 10인 이하인데 현장투표를 채택하려면 다른 단위조직과 통합해야 한다.
- 투표구 인원이 10인 이하인데 현장투표를 채택하려면 다른 투표구와 통합해야 한다.
- 투표소 인원이 10인 이하인데 현장투표를 채택하려면 다른 투표소와 통합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못할 시 민주노총 투표에 한해 모바일 투표로 강제 전환되며 선거인명부 상 휴대전화 번호가 없을 시 민주노총 투표에 한해 재적에서 제외된다.

2023년 금속노조 중앙선거관리 해설 및 지침

- 금속노조, 금속노조 각 지부, 민주노총 중앙, 민주노총 지역본부, 민주노총 지역지부(일부에 해당), 그리고 지회 및 기업지부 선거를, 하나의 똑같은 선거인명부로 진행함에 따라, 모든 각급 선거의 투표구·투표소를 민주노총 선거관리규정이 정하는 바대로 일치시킵니다.

지부·지회 등 크급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금속노조 선거관리규정

제7조(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사무의 공정한 집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2. 지부 선거관리위원회 : 7인 이내.
3. 지회 선거관리위원회 : 지회의 규모에 따라 지회에서 선출하고 지부 선관위원회를 거쳐 중앙 선관위원회에 그 명단을 통보한다.

제8조(선거관리위원의 구성) 각급 선거관리위원은 조합원 중에서 다음 절차에 의하여 구성한다.

2. 지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지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지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지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지회 규칙에 따라 선출한다.

제11조(임기와 결원 보충)

2.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는 차기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로 한다.
3.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 지부 선거관리위원이 사퇴한 경우는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보궐한다.
6. 지부 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 또는 유고 시에는 지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재호선한다.

민주노총 선거관리규정 및 금속노조 대상 특례 조항 요약

[투표구-투표소 선관위원의 선정 및 통보]

- [민주노총 현장투표] 하나의 지회(분회, 위원회 포함)가 하나의 투표구로 일치하는 경우 그 지회(분회, 위원회 포함)는 최소 2명의 선관위원(또는 투표사무원)의 명단(이름, 직책, 휴대전화번호)을 금속노조를 통해 민주노총에 통지해야 한다.
- [민주노총 현장투표] 하나의 지회(분회, 위원회 포함)를 2개 이상의 투표구로 나눈 경우 각 투표구마다 최소 2명의 선관위원(또는 투표사무원)의 명단(이름, 직책, 휴대전화번호)을 금속노조를 통해 민주노총에 통지해야 한다.
- [민주노총 현장투표] 각 투표구별로도 2곳 이상의 투표소(1층, 식당 3층...이런 식)로 나뉘질 경우 투표소별 최소 1명의 선관위원(또는 투표사무원)의 명단(이름, 직책, 휴대전화번호)을 금속노조를 통해 민주노총에 통지해야 한다.
- [민주노총 현장투표] 각 투표소별로도 여러 투표함을 두고 현장투표를 진행케 하려는 곳은 선거인명부를 배부받을 숫자만큼의 선관위원(또는 투표사무원)의 명단(이름, 직책, 휴대전화번호)을 금속노조를 통해 민주노총에 통지해야 한다.
- [민주노총 현장투표] 10인 이하 투표구에 한해 1명의 선관위원(또는 투표사무원)을 선정해 그 명단(이름, 직책, 휴대전화번호)을 금속노조를 통해 민주노총에 통지해도 된다.

- [민주노총 현장투표] 위의 모든 경우, 금속노조 각 지부 (전임) 간부가 각 투표구·투표소 선관위원(또는 투표사무원) 명단으로 등록되어도 된다.
- [민주노총 전자투표로의 강제 전환] 10월 30일(월) 18시까지 위 각 명단 제출이 금속노조를 통해 민주노총에 보고되지 못할 시, 민주노총 투표에 한해 모바일 투표로 강제 전환되며 선거인명부 상 휴대전화번호가 없을 시 민주노총 투표에 한해 재적에서 제외된다.
- [민주노총 선거의 전자투표 채택 시] 지회(분회 및 위원회 포함)별 선관위원 1명 명단(이름, 직책, 휴대전화번호)을 금속노조를 통해 민주노총에 통지하는 것만으로도 민주노총 선거를 치를 수 있다. 이 1인은 동일 투표구 내 하나의 현장투표소와 여러 전자투표소 둘 다 담당할 수도 있다.

2023년 금속노조 중앙선관위 해설 및 지침

- 9월 18일(월) 조합 147차 중앙위원회 의결 직후 지부 및 지회마다 선거관리위원을 신속히 구성하여 그 명단을 금속노조 중앙선거관위원회에 명단 통보해야 합니다.
- 모든 지부는 10월 12일(목)까지 지부 선거관리위원을 운영위에서 선출 완료해 금속노조 중앙선관위에 명단을 통보합니다. 이미 선관위가 구성돼 있지만 인원 보충이 필요한 단위는 보궐 선출해 구성합니다.
- 금속노조-민주노총 동시선거 조직 결정에 의거한 올해(2023년)에 한해, 모든 지회(분회 및 위원회 포함) 민주노총 선거관리규정이 정하는 대로 각 투표구-투표소 선관위원 또는 투표사무원 명단을 지부를 통해 금속노조에 보고해야 하며 금속노조에 보고되는 최종 시한은 10월 30일(월) 18시까지로 합니다. 이것이 집행되지 않는 곳은 민주노총 투표에 한해 모바일투표로 강제 전환하며, 이때 선거인명부에 휴대전화번호가 없을 시 민주노총 투표에 한해 재적에서 제외됨을 유의바랍니다.

2023 동시선거 선거인명부

금속노조 선거관리규정

제17조(선거인명부 작성)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 임원 및 지부 임원선거의 경우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 마감일로부터 48시간 이전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8조(선거인명부 열람 및 수정)

1.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2. 명부의 열람은 투표 전일까지 하되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3. 선거인명부 중 착오 또는 누락 사항을 지적한 조합원이 있을 시 즉시 확인하여 정당하게 수정하여야 하며 이의제기는 투표개시 시간으로부터 48시간 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단, 이의제기 시한을 중앙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금속노조 147차 중앙위 [선거권자 확정일]

- 이번 조합 13기 동시선거 선거권자는 2023년 10월 19일(목) 현재 조합에 가입된 이로 한다. 단, 권리 제한자는 제외.
- 9월 20일(수) ~ 10월 19일(목) 신규 가입자와 조합비(산별기금 납부 및 기금반환 의무 이행 포함) 체납(2개월 이상) 조합원 모두 10월 28일(토) 14시까지 조합비를 납부한 경우에 한해 선거권을 부여한다.
- 선거인명부 이의제기 시한은 11월 10일(금) 18시로 하여 11월 13일(월) 14시에 선거인명부를 최종 확정한다.

민주노총 선거관리규정 요약(2023년)

- 선거인명부(조합원 명부) 취합 및 등록을 8월 29일(월) 시작하여 9월 22일(금) 마감함.
- 9월 23일(토) ~ 10월 5일(목) 중 120만 조합원에 메시지를 발송함.
- 위 메시지 발송과 동시에 선거인명부 열람·수정·정정을 개시해 10월 25(수)에 수정·정정 마감함.
- 11월 1일(수)부터 근무지 장소가 바뀔 것으로 확실시되는 현장투표 조합원 조치 시작해 11월 7일(화) 마감함.
- 11월 1일(수)부터 휴대전화번호가 바뀐 전자투표 조합원 조치를 시작해 11월 13일(월) 마감함.
- 11월 13일(월) 선거인명부를 최종 마감해, 11월 14일(화)부터 현장투표 선거인명부 지역본부 출력 배부 시작함.

민주노총 선거관리규정 특례

제100조의2(선거인명부 확정일 특례) ① 민주노총 및 지역본부 임원 직접선거와 함께 동시선거를 진행하는 가맹조직에 한하여 규정 제29조의 선거인명부 확정일이 아닌 해당 조직의 규정이

정한 날을 확정일로 한다. ② 본 규정 및 선거관리규칙에서 선거인명부 확정일을 기준으로 하는 각종 조치의 기간도 동시선거를 진행하는 가맹조직에 한하여 해당 조직의 명부확정일을 기준으로 순연한다.

2023년 금속노조 중앙선거관리위 해설 및 지침

조합원 명단 작성 제출

- 금속노조-민주노총 동시선거 조직 결정에 따라 민주노총 직선 추진 일정에 의거 모든 지회(분회 및 위원회 포함)는 각 지부를 통해, 8월 28일(월)부터 9월 22일(금)까지 민주노총이 정한 서식에 따라 조합원명부가 민주노총-금속노조 동시 명부관리시스템에 직접 등록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금속노조 소속 지부 담당자가 지회(분회, 위원회) 조합원명부를 별도 양식(공문으로 안내) 엑셀로 취합하여 조합-민주노총 동시선거 명부관리시스템에 로그인(아이디와 비밀번호)해 명부를 직접 등록하는 방식입니다.

본 조합원명부 등록 이후 11월 13일(월) 명부 최종 확정 시까지 수정·정정이 수시로 계속 이뤄지므로 본 조합원명부 등록 때는 현 조합원 전체 명단 그대로 제출하면 됩니다.

- 금속노조-민주노총 동시선거 명부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할 수 있는 지부 담당자만이 이후에도 해당 조직 명부의 등록·수정·추가·삭제가 가능합니다. 이 아이디를 부여받은 이는 금속노조 및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름과 휴대전화번호가 공식 통보되며, 이들은 시스템 접속 시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칩니다. 그 외 민주노총 중앙선거관위를 비롯한 금속노조 중앙선거관위, 또는 금속노조 담당자 누구든, 지부 담당자가 시스템에 등록한 명부의 휴대전화번호 목록을 절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지부 담당자의 경우, 명부 등록을 위해 사전 취합해 사용한 휴대전화번호가 담긴 엑셀 파일을 어떠한 형태로든 유출할 경우 민주노총 규약·규정 및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징계당할 수 있습니다.

- 조합원 명부 작성 양식(엑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지역	지역 지부	산별 연맹	가맹_1	단위 조직	투표구	투표소	투표 방법	명부출력 순서	성명	동명이인 구분	휴대 전화번호	여성	비고
		15					13						

- ① 지역 : 민주노총 지역본부 코드(Code) 두(2) 자리 숫자 기재 (별도 안내).
- ② 지역지부 : 민주노총 지역본부 소속 지역지부 코드(Code) 두(2) 자리 숫자를 기재. ·지역지부가 없거나 소속 지역지부를 모르는 경우 '99'를 입력 (별도 안내).
- ③ 산별·연맹 : 금속노조 코드인 15를 입력.
- ④ 가맹_1 : 금속노조 지부별 코드코드(Code) 세(3) 자리 숫자를 기재 (별도 안내).
- ⑤ 단위조직 : 금속노조 소속 각 단위조직 코드(Code) 네(4) 자리 숫자 기재. 단, 지회 신규 설치, 분할, 해산 등 사전 부여한 단위조직 구분 코드의 수정이 필요한 지부는 조합 선거 담당자와 소통 요망

(별도 안내).

- ⑥ 투표구 : 지회(분회) 산하에 2개 이상의 투표구를 나눈 경우 각 투표구 이름 각기 기재. (예시) 단위 조직은 '경남지부 현대위아지회'로 동일하지만 조합원이 창원과 평택에 분포하는 경우 투표구를 '창원', '평택'으로 구분 (별도 안내).
 - ⑦ 투표소 : 투표소 이름을 단위조직마다 각기 정하여 기재. (예시) 제1·제2, 00식당, 3층·4층 등으로 구분 / 현장직, 사무직 등으로 구분해 기재도 가능 (별도 안내).
 - ⑧ 투표방법 : **금속노조 산하 조직은 모두 13(현장투표)로 우선 기재해 제출함.** 금속노조는 내부 의결 절차를 거쳐 10월 24(화)까지 모든 단위조직의 조합-지부-지회, 민주노총 직선 투표방법을 최종 결정하도록 지침 시행 예정이므로 **추후 금속노조가 일괄 변경 조치를 할 예정.**
 - ⑨ 명부출력순서(연번) : 현장투표 시 조합원 서명용으로 사용할 명부가 입력한 순서대로 출력되길 원할 경우 투표소별로 1, 2, 3 ... 번호를 기재 (연번을 입력하지 않으면 투표소별 명부가 이름 순서(ㄱ~ㄴ)로 출력됨).
 - ⑩ 성명 : 조합원 이름을 입력하되, 성(姓)과 이름 사이 띄어쓰기 금지.
 - ⑪ 동명이인구분 : 동일 현장투표소 내 동명이인이 있는 경우 구분할 수 있는 내용 기재. (예시) A, B 혹은 1, 2, 3 등.
 - ⑫ 휴대전화번호 : 010-1234-5678 방식으로 중간에 하이픈(-) 기재.
 - ⑬ 여성 : 여성 조합원인 경우 "Y" 를 입력. 그 외의 공란으로 둬.
 - ⑭ 비고 : 현장투표소 운영 시 명부 관리를 원활하게 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자유롭게 입력. (예시) 필요 시 '부서', '사번' 등 단위조직(지회, 분회)의 필요에 따라 10글자 이내로 입력함.
- 조합원 명부 제출(등록) 시 휴대전화번호 기재는 민주노총 선거관리규정 23조(선거인명부등제)에 의거해 의무사항입니다. 민주노총 선거 투표를 현장투표로 하려고 마음먹은 곳도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만일 10인 이하 투표구(소)이거나, 해당 투표구(소)의 선관위원(또는 투표사무원)이 제때 마련되지 않거나, 민주노총 선거 현장투표의 세부 일시(시간까지) 장소(세부 장소)가 온전히 제때 보고되지 않을 경우, 휴대전화번호가 없는 해당 조합원은 민주노총 투표에 한해 재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노조 선거를 위한 조합원 휴대전화번호 취합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노조법 모두 검토된 사항입니다. 단, 누구든 휴대전화번호 외 생년월일이나 주민등록번호는 절대 취합하지 않습니다. 조합원 휴대전화번호 목록은 민주노총-금속노조 중앙선관위조차 열람 불가하게 암호화 저장 시스템 구축돼 있습니다.

금속노조 조합원에 1회 문자 발송

- 금속노조 조합원 전체에, 각 지부가 등록 완료한 금속노조 조합원 명부의 휴대전화번호로 민주노총-금속노조가 모바일 메시지를 10월 5일(목) 전송할 예정입니다. 모바일 메시지를 받은 조합원이 모바일 메시지의 URL로 접속하면 <금속노조 ○○○조합원은 11월 21일 시작하는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선거의 선거인입니다. 최종 선거인 확정은 11월 13일입니다(예시)>라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조합원마다 안내 URL이 다르게 부여되므로, 본인 이외에는 확인 불가합니다.
- 이는 조합원에게 선거인명부를 기초 열람케 하는 보조 수단이기도 합니다. 단, 조합원명부 제출 시 휴대전화번호 기재자에 한합니다.

조합원(선거인) 명부 보정

- 금속노조 조합원 전체에 문자가 발송되는 10월 5일(목)부터 선거인명부 보정이 시작됩니다. 이 보정도, 금속노조 소속 지부 담당자가 조합-민주노총 동시선거 명부관리시스템에 로그인(아이디와 비밀번호)해 명부를 직접 정정하는 방식입니다(별도 안내).
- 이때, 조합비 체납 조합원이 10월 28일(토) 14시까지 조합비를 납부하는 경우, 9월 20일 ~ 10월 19일에 가입한 신규조합원이 10월 28일(토) 14시까지 1회의 조합비를 납부하는 경우 등 9월 22일(금)까지 제출(등재)한 명부에서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 명단의 변동이 발생한 지부는 명부를 10월 29일(일)까지 해당 명부를 수정해야 합니다.
- 보정기간 동안 금속노조 중앙선관위는 △ 자체 선거 △ 금속노조·금속노조 지부 선거 △ 민주노총 민주노총 본부 선거 등 지회(분회 및 위원회 포함)가 지부를 통해 10월 23일(월) 18시까지 금속노조에 보고한 각 투표일 및 투표방법을 토대로 10월 30일(월)까지 선거인명부의 각 투표방법을 일괄 변경 조치도 합니다. 또 금속노조 중앙선관위는, 각 지부가 명부를 보정했지만 미처 권리 제한자를 제하지 못한 경우 이를 10월 30일(월)까지 일제히 삭제합니다.
- 아울러 금속노조 중앙선관위는 10월 30일(월) 18시까지 지부를 통해 금속노조에 보고한 민주노총 선거관리규정이 정하는 각 투표구-투표소 선관위원 또는 투표사무원 명단을 토대로, 명단 제출이 온전히 집행되지 않는 투표구-투표소를 민주노총 투표에 한해 11월 7일(화)까지 모바일투표로 강제 전환 조치를 합니다. 또 금속노조 중앙선관위는 11월 8일(수) 18시까지 지부를 통해 금속노조에 보고한 민주노총 현장투표의 세부적인 일시(몇시부터 몇시까지 등) 및 장소(정문, 뒤통 등) 보고를 토대로, 보고 제출이 온전히 집행되지 않는 투표구-투표소를 민주노총 투표에 한해 11월 10일(금)까지 모바일투표로 강제 전환 조치를 합니다.
- 각 지부는, 위 보정기간 전체 동안 명부 누락 및 오기에 대해서도 수정가능하며, 이 기간에 근무지 장소가 바뀔 것으로 확실시 되는 현장투표 조합원 조치와 휴대전화번호가 바뀐 전자투표 조합원 조치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단, 11월 13일(월) 14시부터는 어떠한 형태의 선거인명부 수정이 불가합니다.

명부 보정 기간 중 선거인명부 열람

- 모든 지회(분회, 위원회 포함)는 10월 31일(화)부터 조합원에게 선거인명부 열람을 보장해야 하며 열람 시간은 9~18시를 원칙으로 합니다.
- 이 열람을 위해 금속노조 중앙선관위는 민주노총-금속노조 선거관리시스템에서 열람용 선거인명부를 엑셀(Excel) 또는 피디에프(PDF) 파일로 내려받아 지부에 파일로 배부할 예정입니다. 단, 이 파일에는 조합원 휴대전화번호는 당연히 없습니다.
- 각 지회(분회, 위원회 포함)는 각 지부로부터 배부받은 선거인명부를 인쇄하여 조합사무실 등에

비치하거나, 선거인명부 파일을 컴퓨터 모니터에 출력하여 조합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모바일 메시지 등을 활용한 전체 안내도 가능합니다. 단, 이 때 열람되는 선거인명부는 실제 현장투표시 사용되는 명부가 아니므로 열람이 끝나면 폐기합니다.

- 금속노조 중앙선거관리위는 이 기간 동안, 조합원의 선거인명부 등록내역 확인을 보조하는 기술적 수단으로, ARS 음성안내 번호 1522-2220도 함께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는, 조합원이 본인 휴대전화로 이 번호에 전화하면 ARS 음성 안내를 통해 본인의 선거인 등록 여부가 확인되는 시스템입니다. 단, 이는 명부 등록 시 휴대전화번호를 등재한 이에 한하며 11월 10일(금) 18시까지만 운영됩니다.

선거인명부에 대한 이의제기 등

- 명부에 대한 이의제기 접수 마감은 11월 10일(금) 18시로 하며, 각 지부 선거관리위는 이의제기가 정당할 시 지부 담당자를 통해 명부를 수정해 11월 10일(금) 18시까지 금속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수정된 명부를 제출(또는 민주노총 시스템에 수정 등재)합니다. 11월 11일(토)부터 11월 13일(월) 14시까지는 금속노조 중앙선거관리위가 직접 명부를 수정합니다.
- 단, 명부 이의제기 마감시한인 11월 10일(금) 18시가 지난 후 조합원 탈퇴, 제명, 징계로 선거권이 상실되었으나 이를 인지한 게 11월 13일(월) 14시 이후여서 명부 수정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라면 실제 현장투표시 해당자가 투표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이는 별도 안내). 만약 무자격자가 투표한 경우 그 투표가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유효로 간주하고, 당락에 영향을 미치면 해당 단위에 대해 재투표를 실시합니다. 재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을 받아 지부 선거관리위가 주관해야 합니다.

일정별로 보는 선거실무업무

선거일 전(前)까지 _ 선거운동관리 외

8.28(월) ~ 9.13(수)

· 관할 민주노총 지역본부 조정 신청

- 민주노총 선거관리규정 상 조합원 관할 민주노총 지역본부는, 조합원 근무하는 사업장 소재 기준 아래 16개 광역시·도 구분이 원칙입니다.
 - 민주노총 강원본부
 - 민주노총 경기본부
 - 민주노총 경남본부
 - 민주노총 경북본부
 - 민주노총 광주본부
 - 민주노총 대구본부
 - 민주노총 대전본부
 - 민주노총 부산본부
 - 민주노총 서울본부
 -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 민주노총 울산본부
 - 민주노총 인천본부
 - 민주노총 전남본부
 - 민주노총 전북본부
 - 민주노총 제주본부
 - 민주노총 충북본부
- 단, 위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지역을 정하는 것이 그간의 활동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선거관리 및 이후 지역본부 운영에 지장을 가져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외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국에 소규모로 조합원이 산재해 있어 노조 사업은 본점이 있는 지역본부에 결합하는 사업장, 소재지는 다른 지역본부 관할 지역에 속해 있지만 역사적으로 현재 지역본부와 활동을 해 온 사업장 등 관할 지역본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도 조정신청을 접수·심의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 이 기간, 해당 조정이 필요한 각 지회(분회 및 위원회)는 금속노조 각 지부를 통해 금속노조에 관할 민주노총 지역본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9월 13일(수) 낮 12시 금속노조 접수 분까지**에 한하였습니다 (조정 신청 양식은 각 지부에 별도 안내).

8.28(월) ~ 9.22(금)

· 조합원명부 작성과 등록

- 각 지회(분회 및 위원회)는 아래 양식(엑셀)대로 조합원 명부를 작성해 지부에 제출합니다.

① 지역	② 지역 지부	③ 산별 연맹	④ 가맹_1	⑤ 단위 조직	⑥ 투표구	⑦ 투표소	⑧ 투표 방법	⑨ 명부출력 순서	⑩ 성명	⑪ 동명이인 구분	⑫ 휴대 전화번호	⑬ 여성	⑭ 비고
		15					13						

- 금속노조 소속 각 지부 담당자(별도 지정)는 취합한 지회(분회, 위원회) 조합원 명부를 금속노조-

민주노총 동시선거 명부관리시스템 (list.kctu.org) 에 로그인(아이디와 비밀번호)해 명부를 직접 등록합니다. (명부의 등록 및 수정 방법은 지부 담당자에 별도 안내)

- 본 조합원 명부 등록 이후, 11월 13일(월) 명부 최종 확정 시까지 수정·정정이 수시로 이뤄지므로 본 조합원 명부 등록 시에는 현 조합원 전체 명단만 그대로 등록하면 됩니다.
- 10월 23일(월)까지 모든 조직의 조합-지부-지회, 민주노총 직선 투표 방법을 최종 보고받아 각 투표 방법을 일괄 변경 조치할 예정이니 본 조합원명부 등록 시 투표 방법은 모두 현장 투표로 일괄 기재해 제출하면 됩니다.
- 조합원명부 제출(등록) 시 휴대전화번호 기재는 의무입니다. 민주노총 선거 투표를 현장투표로 하려고 마음먹은 곳도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번호 등록이 없을 시 전자투표로의 강제전환 사유가 될 경우 민주노총 투표 재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유의바랍니다.

노조 선거를 위한 조합원 휴대전화번호 취합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노조법 모두 검토된 사항입니다. 단, 누구든 휴대전화번호 외 생년월일이나 주민등록번호는 절대 취합하지 않습니다. 조합원 휴대전화번호 목록은 민주노총-금속노조 중앙선관위조차 열람 불가하게 시스템화 돼 있습니다.

- 모든 지회 및 지부는 **9월 22일(금) 18시까지** 명부 제출 및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날까지 명부 등록된 조합원 수와 9월 말 현재 민주노총 의무금 납부 조합원 수를 놓고 금속노조에 부여되는 민주노총 선거권 수가 1차 정해집니다. 따라서 명부 등록 완료 시한을 지켜야 합니다.

9.22(금)

· 민주노총 선거일정 공고 현장 안내

- **민주노총**이 발행한 벽보형 공고문은 **각 지회(분회 및 위원회 포함)마다 일일이 배송**됩니다. 각 지회(분회 및 위원회 포함)는 본 공고문을 게시판에 부착해 조합원에 알립니다.
- 금속노조는 민주노총으로부터 공고문 파일도 배부받아 각 지부에 파일 배포할 예정입니다. 각 지부는 본 공고문 파일을 각 지부 및 지회(분회 및 위원회 포함) 소식지를 통한 공지, 공고문 파일의 문자·SNS를 통한 공지 등의 조치를 합니다.

공고문에는 민주노총 중앙임원과 지역본부 임원 동시 선거를 적시하고 모든 선거일정(후보등록마감 일시 등)이 통일되므로, 민주노총 지역본부가 따로 선거일정 공고문을 발행하지는 않습니다.

9.25(월) ~ 10.5(목)

· 모바일 메시지 발송 사전 안내와 메시지 발송

- **9월 25일(월)** 금속노조 중앙선관위는 각 지부에, 10월 5일(목) 금속노조 전체 조합원에게 모바일 메시지가 발송된다는 사전 안내문을 파일로 배포합니다. 각 지부는 이를 **10월 4일(수)까지** 지회(분회 및 위원회 포함)에 배포하여 조합원에게 공지하도록 조치합니다. 지회(분회 및 위원회 포함)는 각 게시판 부착, 소식지를 통한 공지, 문자·SNS를 통한 공지 등의 조치를 합니다.
- 민주노총·금속노조 중앙선관위는 금속노조 조합원 전체에 **문자를 10월 5일(목) 발송**하며, 메시

지를 받은 조합원이 모바일 메시지의 URL로 접속하면 『금속노조 〇〇〇조합원은 11월 21일 시작하는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선거의 선거인입니다. 최종 선거인 확정은 11월 13일입니다(예시)』 라는 문구를 확인하게 됩니다. 단, 조합원명부 제출 시 휴대전화번호 기재자에 한합니다.

9.25(월) ~ 10.12(목)

· 각 지부 선관위 구성·통보

- 모든 지부는 **10월 12일(목)까지** 지부 선거관리위원을 운영위에서 선출 완료해 금속노조 중앙선관위에 명단을 통보합니다. 이미 선관위가 구성돼 있지만 인원 보충이 필요한 단위는 보궐 선출해 구성합니다.

9.25(월) ~ 10.19(목)

· 권리제한 목록 취합

- 금속노조 중앙선관위는 조합과 지부로부터 **10월 19일(목) 18시까지** 아래 목록을 취합합니다. (취합 방법은 금속노조 중앙이 별도 조치 예정)
 - 9월 20일(수)~10월 19일(목) 사이 신규 가입한 조합원 목록 및 지회 목록.
 - 조합비 2개월 이상 미납 조합원 목록 및 지회 목록.
 - 산별기금 미납 및 신분보장·장기투쟁대책 기금 반환의무 불이행 조합원 목록 및 지회 목록.
 - 징계에 따른 제명 또는 권리제한 조합원 목록.
 - 조합 의무교육 미이수 조합지부지회 임원 목록.
- 조합원 명부 중 권리제한자가 포함돼 있을 경우, 금속노조 중앙선관위가 **10월 30일(월)까지** 직접 삭제할 수 있습니다. 금속노조 선거권자와 민주노총 선거권자는 정확히 일치합니다. 또한 이 선거권자는 각 지부 및 지회 선거권자와도 정확히 동일합니다.

9.25(월) ~ 10.23(월)

**· 지회·금속노조·민주노총 각 투표 방법 결정
· 지회·금속노조·민주노총 각 투표일 결정**

- 금속노조 중앙선관위는 9월 22일(금)까지 취합·등록한 전체 금속노조 조합원명부 현황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전체 현황을 재정리할 예정입니다.

지부	단위조직	투표구	투표소	선거인 수

- 각 지회(분회·위원회 포함)는 아래 투표일과 투표 방법을 자체 의결을 통해 적시해 이를 지부가 모두 모아 금속노조 중앙선관위에 보고합니다. 이 보고 시한은 **10월 23일(월) 18시까지**입니다.

지부	단위 조직	투표구	투표소	선거인수	투표방법 / 투표일						
					지회 선거 (분회·위원회 포함)		금속노조 선거 (지역지부 동시)		민주노총 선거 (지역본부 동시)		
					투표방법	투표일	투표방법	투표일	투표방법	투표일	

- 투표방법 기재사항은 **현장, 모바일, ARS** 등 세(3)개 중 하나로 제한합니다(그 외 우편투표 대상자는 별도 취합해 금속노조 중앙선관위가 일괄 조치할 예정).
- 각 **투표일은 아래 투표방법과 반드시 연계**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번호	지회(기업지부) 자체 투표일	금속노조 투표 (지부 동시)	지회(기업지부포함) 자체 투표방법	민주노총 투표 (본부 동시)
①	11/21(화)~11/24(금) 중 시행	1차 현장투표 (1일~4일 중 택)	현장투표 (1일~4일 중 택)	1차 현장투표 (1일~4일 중 택)
		1차 현장투표 (1일~4일 중 택)	현장투표 (1일~4일 중 택)	1차 전자투표 (4일 전체 기간임)
		1차 전자투표 (4일 전체 기간임)	전자투표 (4일 전체 기간임)	1차 전자투표 (4일 전체 기간임)
②	11/25(토)~11/27(월) 중 시행	×	현장투표 (1일~3일 중 택)	1차 현장투표 (1일~3일 중 택)
③	12/04(월)~12/07(목) 중 시행	1차 투표방법과 동일	금속노조 투표방법과 동일해야 함	×
④	12/11(월)~12/14(목) 중 시행	×	현장투표 (1일~4일 중 택)	1차 투표방법과 동일
		×	전자투표 (4일 전체 기간임)	1차 투표방법과 동일
⑤	12/18(월)~12/21(목) 중 시행	1차 투표방법과 동일	금속노조 투표방법과 동일해야 함	×

* **현장투표의 경우 해당 기간 중 하루 내지 전체기간 모두 중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또는 ARS 투표의 경우 무조건 해당 기간 전체(4일)가 투표일입니다.**

- 위 ① 내지 ⑤의 기간 외에 지회(기업지부) 자체 투표를 진행하고자 하는 곳은 **10월 16일(월) 18시 까지** 금속노조에 지부를 통해 공문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10월 17일(화) 금속노조 중집 승인을 거치게 됩니다.

이 경우의 조직이 자체 선거를 온라인(ARS, 모바일) 투표로 진행하고자 하는 곳은 해당 단위가 직접. 온라인투표 담당 업체와 협의해 진행해야 하며 그 온라인 투표 비용 역시 그 단위 지부담입니다.

- 위 지회·금속노조·민주노총 각 투표 방법 및 각 투표일이 종합 취합되면 금속노조 중앙선관위는 기존 조합원명부 시스템에서 투표 방법을 **10월 30일(월)까지 일괄 변경**할 예정입니다.

이때 선거인 수가 10인 이하인데 현장투표로 표기한 단위는, 민주노총 투표의 전자투표로의 전환 등을 금속노조 중앙선관위가 지부 및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조정할 예정입니다.

9.25(월) ~ 10.30(월)

· 투표구· 투표소 선관위원· 투표사무원 명단 제출

- 금속노조 중앙선관위는 9월 22일(금)까지 취합·등록한 전체 금속노조 조합원명부 현황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전체 현황을 재정리할 예정입니다.

지부	단위조직	투표구	투표소	선거인수

- 모든 지회(분회 및 위원회 포함)는 각 투표구-투표소 선관위원 또는 투표사무원 명단을 지부를 통해 아래와 같이 금속노조에 보고해야 하며 보고되는 최종 시한은 **10월 30일(월) 18시까지**로 합니다.

지부	단위조직	투표구	투표소	선관위원 성명	휴대전화번호	투표소 주소

- 하나의 지회(분회, 위원회 포함)가 하나의 투표구로 일치하는 경우 2명의 명단을 내야 합니다.
 - 하나의 지회(분회, 위원회 포함)를 2개 이상의 투표구로 나누면 각 투표구마다 2명의 명단을 내야 합니다.
 - 투표구 별로 2곳 이상의 투표소(1층, 식당 3층...)로 나뉘질 경우 투표소별 1명의 명단을 내야 합니다.
 - 위 모든 경우, 금속노조 각 지부 (전입) 간부가 그 명단이어도 됩니다.
 - 각 명단의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합니다.
 - 투표소 주소란, 조합원에게 배포할 공보물을 배송받을 주소를 말합니다.
- 위 모든 지회(분회 및 위원회 포함) 각 투표구-투표소 선관위원 또는 투표사무원 명단이 종합 취합 되면 금속노조 중앙선관위는 기존 조합원명부 시스템 등재 현황에서 투표 방법 변경을 비롯한 각종 조치를 **11월 7일(화)까지 일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때 현장투표소임에도 본 명단 제출이 온전히 되지 않은 단위는, 민주노총 투표의 전지투표로의 전환 등을 금속노조 중앙선관위가 지부 및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조정할 예정입니다.

10.5(목) ~ 10.30(월)

· 선거인명부 보정

- 금속노조 조합원 전체에 문자가 발송되는 10월 5일(목)부터 **선거인명부 보정**이 시작됩니다. 이는 **지부 담당자**가 조합-민주노총 동시선거 명부관리시스템에 로그인(아이디와 비밀번호)해 명부를 직접 정정하는 방식입니다(별도 안내). 이때, 조합비 체납 조합원이 조합비를 납부하는 경우, 신규조합원이 1회의 조합비를 납부하는 경우 등 9월 22일(금)까지 제출(등재)한 명부에서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 명단의 변동이 발생한 지부는 명부를 수정해야 합니다.

각 지부는, 위 보정기간 전체 동안 명부 누락 및 오기에 대해서도 수정 가능하며, 투표기간에 근무지 장소가 바뀔 것으로 확실시되는 현장투표 조합원 조치와 휴대전화번호가 바뀐 전자투표 조합원 조치 모두 하시면 됩니다.

- 단, **조합-민주노총 동시선거 명부관리시스템**은 로그인(아이디와 비밀번호) 권한이 있는 **지부 담당자에 10월 5일(목)부터 10월 23일(월) 18시까지** 모든 수정·정정·변경 권한을 전면 개방합니다. 따라서 지부 차원의 선거인명부 보정을 10월 23일(월)까지 완료해 줄 것을 권고합니다. **10월 24일(화)부터 조합-민주노총 동시선거 명부관리시스템 사용 권한은 지부가 요청하고 금속노조 중앙선관위가 승인하는 지부 담당자에 한해** 개방합니다. 이는 금속노조 중앙선관위 차원의 선거인명부 수정 직접 조치가 시작되는 10월 24일(화)부터의 중앙-지부 간 수정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따라서 이때 승인 절차란 상호 소통으로 같습니다.
- 지부와 금속노조 중앙선관위가 동 기간 함께 진행하는 선거인명부 보정은 **10월 30일(월) 18시** 까지 완료합니다.

10.20(금)

· 금속노조 선거일정 공고 현장 안내

금속노조 선거관리규정

제6조(선거일 및 공고)

2. 선거일은 아래와 같이 공고하여야 한다.

① 직접 선출하는 조합 및 지부 임원은 30일 이전에 각각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및 지부선거관리위원장이 한다.

- 금속노조 중앙선관위는 조합 임원선거 공고와 임원선출을 위한 총회 공고를 각각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위원장 명의로 제작해 미리 **10월 16일(월) 까지 지부에 도착하도록 발송**해 둘 예정입니다. 각 지부 선관위도 조합과 선거일정이 동일한 지부 임원선거 공고를 **10월 16일(월)까지** 조합과 소통하여 준비합니다. 그리하여 당일 지부 운영위 등을 통해 각 지회로 배포해야 합니다. 각 공고를 수령한 지회(분회 및 위원회)는 **10월 20일(금)**에 일제히 현장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금속노조는 **조합 중앙 선거 공고문 파일**도 각 지부에 파일 배포할 예정입니다. 각 지부는 본 공고문 파일을 각 지부 및 지회(분회 및 위원회 포함) 소식지를 통한 공지, 공고문 파일의 문자·SNS를 통한 공지 등의 조치도 합니다.

단위조직(지회, 분회, 위원회) 선거는 해당 단위 규칙이나 선거관리 세칙에 따라 단위조직 선거관리 위원회가 때에 맞춰 공고하면 됩니다.

10.26(목)

· 민주노총 후보자 확정공고 현장 안내

- 금속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노총으로부터 민주노총 중앙임원 후보자 확정공고문과 16개 지역본부 임원 후보자 확정공고문 등 **17개 공고문 파일**을 여러 형식의 파일로 받아 **10월 26일(화)** 지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각 지부는 이를 즉시 지회(위원회 및 분회 포함)에 전달하여, 공고문 파일 중 중앙공고문과 해당 지역 공고문을 게시판 출력 부착, 단위조직 소식지를 통한 공지, 문자·SNS를 통한 조합원 공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10.30(월)

· 금속노조 후보자 등록 마감 조치

금속노조 선거관리규정

제21조(입후보자 등록) 조합의 임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조합원은 필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하는 입후보 등록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조합원의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하는 조합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에 동반 입후보(러닝메이트)하려는 조합원과 부위원장 후보에 입후보하려는 조합원은 선거공고 후 10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이 조합 임원에 입후보할 때는 선거공고 후 3일 이내에 사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등록요건을 갖추었을 때 즉시 등록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4. 조합원은 조합 임원으로 입후보할 경우 지부 임원선거에 동시 입후보할 수 없다.
5.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1통, 조합 활동 경력소개 1통이다.

-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지부장-수석부지부장-사무국장)은 동반 출마해야 합니다. 각 부위원장(부지부장)은 개별로 단독 출마해야 합니다. 조합 임원은 위-수-시를 포함하여 10명을 넘지 못합니다(감사 제외).
- 조합·지부 임원 후보자 등록 마감은 **10월 30일(월) 14시**로 합니다. 이때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신청서 1통 (선거관리 각종 서식 별도 안내).
 - 조합활동 경력소개 1통 : 입후보자 등록공고문에 넣을 경력 사항을 짧게 3줄 이내로 제출.
 - 위 등록 서류 외에도 금속노조 선거위 홈페이지에 게시할 사진과 약력, 슬로건, 공약을 아래 양식대로 제작 또는 작성해 USB 메모리에 저장해 제출 (담당자의 휴대전화 번호 반드시 명기).

- 1) 사진 : 명함판 규격(가로:세로=5:7)에 jpg 파일로 제출.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과 부위원장 후보 모두 개인 증명사진(인물사진)을 제출.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 후보는 개인 증명사진과 별도로 3명이 함께 찍은 가로 형식의 사진 파일도 제출함.
- 2) 약력 : 10줄 이내
- 3) 슬로건 : 메인 슬로건 1개
- 4) 공약 : A4 용지 1장 이내

- 후보자의 등록은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며, 제출자는 후보자 당사자가 아니라도 후보자를 대리할 만한 조합원은 누구라도 가능합니다. 단, 직접 와서 제출해야 하고 (팩스 이메일 등 불가) 당사자가 아닌 경우 위임장을 별도 제출받아야 합니다.
- 후보자의 기호는 등록 마감 후 **14시 30분 금속노조 중앙선거관리(지부 등록자는 각 지부 선거위)와의 간담회**에서 추천으로 정하며, 이 추천은 후보 당사자가 아닌 대리자도 가능합니다.

10.31(화) ~ 11.6(월) · 금속노조 후보자 확정공고 현장 안내 등

금속노조 선거관리규정

제22조(입후보자의 공고)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하였을 때는 서류심사 후 소속, 성명, 성별, 연령, 조합경력 등을 등록 마감 다음 날부터 공고하여야 한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 입후보등록 후 동반 출마하는 후보 중 결원 또는 유고 발생 시 등록 무효로 처리한다.

제23조(보완지시 불응에 대한 처리)

1. 입후보 등록신청서가 관계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등록 3일 이내에 명하고 명한 날로부터 24시간 이내 시정 또는 보완되지 않을 경우 입후보 자격이 상실된다.
2. 제31조(금지사항)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에게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통보하고 유인물을 통해 공식 사과토록 해야 하며 주의를 준다.
3. 위 2항의 명령을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고를 주고, 그 사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조합원에게 공개한다.(공개방식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4. 경고 처분을 받은 입후보자가 추가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후보자 자격상실을 의결할 수 있다.

- 금속노조 중앙(지부)선거위는 입후보등록 사항에 대해 등록 마감 다음날인 **10월 31일(화)** 후보자 확정 공고를 냅니다. 이를 위해 금속노조 중앙(지부)선거위는 그 **공고문 파일**을 조합(지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지회(분회 및 위원회 포함)는 이를 내려받아 **현장에 출력해 (임시로)** 부착해야 합니다.

금속노조 중앙선거위는 10월 30일(월)까지 취합한 각 투표구·투표소 선거위원 또는 투표사무원들에게 본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제기 안내 모바일 메시지를 1회 발송할 예정입니다.

- 금속노조 중앙선거위는 즉시 입후보 등록 **벽보형 공고를 제작해 각 지부에 발송**할 예정입니다. 각 동시선거 지부도 지부 입후보 등록 벽보형 공고를 즉시 조합과 소통해 준비해야 합니다. 지부는 인쇄된 벽보형 공고들을 최대한 신속히 이를 소속 지회에 배포하며, 지회(분회 및 위원회 포함)는 임시로 출력·부착한 공고를 정식 공고로 교체해야 합니다. **인쇄된 벽보형 공고들의 지회(분회 및 위원회 포함) 배부 시작일은 11월 6일(월)**로 예상됩니다.

- 금속노조 중앙 및 지부선관위는 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하거나 동반출마한 후보 중 일부의 결원(유고)이 발생하여 등록이 무효가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합니다. 여기서 ‘지체없이’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사안이 발생한 즉시로 해석합니다.
- 금속노조 중앙선관위는 후보자가 선거관리 규정 제23조 2항의 명령을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고하고, 즉시 그 사실을 직접 조합원에게 공개합니다.

금속노조 중앙선관위원장 명의로 각 지부에 해당 사항을 알리는 내용의 공문(공고 첨부)을 발송하고 이를 선관위 홈페이지(선관위 게시판)와 노조 홈페이지(공지 사항 및 공문철)에 게시합니다. 지부 선관위 역시 같은 날 중앙선관위 공문을 지부 홈페이지(공지 사항)에 게시합니다. 그리고 금속노조 중앙선관위는 10월 30일(월)까지 취합한 각 투표구·투표소 선관위원 또는 투표사무원들에게 본 사항을 모바일 메시지로 추가 안내할 예정입니다.

- 아래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입후보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 입후보자 등록신청서가 관계 규정에 저촉돼 중앙(지부)선관위로부터 시정 혹은 보완 명령이 있었음에도 명령 24시간 이내에 시정 또는 보완하지 않는 경우.(이때 선관위는 시정 혹은 보완 명령을 후보자 등록 마감 이후 3일 이내에 시행해야 함).
 - 선거운동 관련 금지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해 유인물을 통한 공식 사과(주의) 또는, 해당 단위 선관위의 직접 조합원 공개(경고) 뒤에도 추가 위반사항이 발생해 중앙(지부)선관위가 자격상실을 의결한 경우.
 - 동반 출마한 후보 중 일부가 사퇴(사망 포함) 등으로 결원(유고)이 발생한 경우.

10.31(화) ~ 11.8(수) · 민주노총 현장투표소 세부 일시 · 장소 보고

- 금속노조 중앙선관위는 10월 30일(월)까지 보정을 마친 전체 금속노조 조합원명부 현황 중 **민주노총 현장투표 채택 단위에 한해** 아래와 같이 전체 현황을 다시 재정리할 예정입니다.

지부	단위조직	투표구	투표소

- 각 지회(분회·위원회 포함)는 아래와 같이 **민주노총 현장투표에 한한** 세부적인 일시와 장소를 적시해 이를 지부가 모두 모아 금속노조 중앙선관위에 보고합니다. 이 보고 시한은 **11월 8일(수) 18시까지**입니다.

지부	단위조직	투표구	투표소	민주노총 현장투표		
				개시일시	종료일시	투표장소
				① 월 일 시	① 월 일 시	
				② 월 일 시	② 월 일 시	
				③ 월 일 시	③ 월 일 시	

※ 민주노총 현장투표의 경우, 하루 투표라 하더라도 중간에 투표 중단 시간이 있으면 중단 뒤 재개하는 투표를 새로운 일시로 기재해야 합니다. 반면, 2일 이상의 연속된 투표라 하더라도 중간에 투표 중단 시간이 없으면 하나의 투표일시로 기재합니다. 그리하여, 민주노총 현장투표의 경우 투표 중간 중단 뒤 새로 재개하면 새로운 투표함으로 현장투표를 해야 하므로 투표함이 여러개 필요합니다. 이 투표함은 민주노총 지역본부에서 배부한 투표함만 유효합니다.

- 지부를 통해 지회(분회 및 위원회 포함)로부터 위 민주노총 현장투표 세부 일시 장소를 취합하면, 금속노조 중앙선관위는 기존 조합원명부 시스템 현황에서 민주노총 투표 방법 변경 조치를 **11월 10일(금)까지 일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때 본 보고 제출이 온전히 되지 않은 단위, 민주노총 투표의 전자투표로의 강제 전환 등을 금속노조 중앙선관위가 지부 및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이행할 예정입니다.

10.31(화) ~ 11.10(금) · 선거인명부 열람·이의제기·수정

- 금속노조 중앙선관위는 민주노총-금속노조 선거관리시스템에서 열람용 **선거인명부를 엑셀(Excel) 또는 피디에프(PDF) 파일로 내려받아 지부에 파일로 10월 31일(화) 배부**할 예정입니다.(단, 이 파일에는 조합원 휴대전화번호는 없습니다). 지부는 각 지회(분회, 위원회 포함)에 파일을 배부해 인쇄하여 조합사무실 등에 비치하거나, 선거인명부 파일을 컴퓨터 모니터에 출력하여 조합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모바일 메시지 등을 활용한 전체 안내도 가능합니다.

단, 이때 열람되는 선거인명부는 실제 현장투표시 사용되는 명부가 아니므로 열람기간이 끝나면 폐기합니다.
- 금속노조 중앙선관위는 조합원의 선거인명부 등록 내역 확인을 보조하는 기술적 수단으로, **ARS 음성안내 번호 1522-2220도 함께 웹자보 등으로 10월 31일(화) 안내**할 예정입니다. 지부는 각 지회(분회, 위원회 포함)에 웹자보 등의 파일을 전파해 안내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조합원이 본인 휴대전화로 이 번호에 전화하면 ARS 음성 안내를 통해 본인의 선거인 등록 여부 확인되는 시스템입니다. 단, 이는 명부 등록 시 휴대전화번호를 등재한 이에 한합니다.
- 금속노조 중앙선관위는 10월 30일(월)까지 취합한 **각 투표구-투표소 선관위원 또는 투표사무원**들에게 본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제기 안내 **모바일 메시지**를 1회 발송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금속노조 중앙선관위 결정으로 금속노조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제기 안내 모바일 메시지도 1회 발송할 수 있습니다.
-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동안 각 지부 선관위는 조합원의 이의제기가 정당할 시 지부 담당자를 통해 **11월 10일(금) 18시까지 선거인명부를 수정**합니다. 이도 **지부 담당자**가 조합-민주노총 동시선거 명부관리시스템에 로그인(아이디와 비밀번호)해 명부를 직접 정정하는 방식입니다(별도 안내).

단, 이 기간 **조합-민주노총 동시선거 명부관리시스템 사용 권한은 지부가 요청하고 금속노조 중앙선관위가 승인하는 지부 담당자에 한해 개방**합니다. 이는 금속노조 중앙선관위 차원의 선거인명부 수정 직접 조치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따라서 이때 승인 절차란 상호 소통으로 같습니다.

금속노조 선거관리규정

제35조(투표용지)

1. 투표용지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인쇄하여야 한다. 단,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찬반 투표용지로 대신 할 수 있다.
2.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3. 투표용지의 수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조합원 수와 동일하여야 한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투표용지를 선거 후보 등록 마감 즉시 제작하여 늦어도 선거 일 10일 전까지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 **금속노조 및 금속노조 지부 임원 선거의 모든 투표용지**는 금속노조 중앙선관위에서 서식에 의거해 **일괄 인쇄해 지부로 발송**합니다. 투표용지에 날인되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인은 금속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으로 합니다.
- 투표용지 색상과 규격은 관례에 따라 아래를 기준으로 하되, 민주노총 직선이 동시에 실시됨을 고려해 중앙선관위 논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위수사: 노랑 / 여성할당 부위원장: 빨강 / 비정규할당 부위원장: 파랑 / 일반 부위원장: 연두
 - 자수사: 보라 / 부지부장: 회색 / 지회장: 흰색
- 금속노조 중앙선관위는 선거인명부 보정이 완료된 10월 30일(월) 현재 기준 금속노조 투표방법이 현장투표인 선거인 수 대로 **10월 31일(화) 일괄 투표용지 제작 및 인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 금속노조 중앙선관위가 인쇄하여 발송한 투표용지는 각 **지부에 11월 10일(금)까지 도착**할 예정입니다. 지부는 이를 11월 14일(화)부터 지회(분회 및 위원회)에 배부합니다.

금속노조 선거관리규정

제25조(선거공보)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 임원선거에 입후보한 조합원의 기호, 사진, 성명, 주소, 연령, 경력 및 공약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후보별 동일 규격으로 선거운동 기간 중 공고형과 자료형으로 2종을 발행·배부하여야 한다.
2. 조합 임원선거 입후보자는 제1항의 공고형 및 자료형 공보 편집파일을 등록 마감 시간 후 48시간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선거공보에 게재할 후보자에 기호는 추첨하여 결정한다.

- 공고형 선거공보란 포스터를, 자료형 선거공보란 정책자료집을 뜻합니다.
- 공보물 자료 제출 마감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포스터 : 11월 1일(수) 14시.**
 - **정책자료집 : 1차는 11월 1일(수) 14시, 2차는 11월 8일(수) 14시.**
 - ※ 단, 지부 임원선거 정책자료집 발간 횟수는 지부 선관위(또는 선관위-후보 간담회)에서 정하도록 합니다.
- 포스터에 게재할 내용은 입후보한 조합원의 기호, 사진, 성명, 경력 및 공약사항 등입니다.
- 공보물 자료 제출 **양식 및 규격은 10월 30일(월) 14:30 선관위 후보자 간담회 시 안내**합니다.
 - ※ 지부 임원선거 공보물 형식은 지부 선관위(또는 선관위-후보 간담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 ※ 지부 선관위는 지부 임원 후보 공보물 자료를 중앙선관위에 전달함 (중선관위 홈페이지 게시 목적).
- 조합 임원선거에 대한 공보는 중앙선관위가, 지부 임원선거에 대한 공보는 지부선관위가 인쇄 및 발송을 관장합니다. 조합 임원선거에 대한 **포스터 및 1차 정책자료집은 11월 6일(월)까지 지부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조합 임원 선거에 대한 **2차 정책자료집은 11월 13일(월)까지 지부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지부는 이 모두를 즉시 지회(분회 및 위원회)에 배포해야 합니다.

조합 임원 선거에 한한 모든 선거공보물을 열람할 수 있는 조합 선관위 홈페이지 해당 주소를 10월 30일(월)까지 취합한 각 투표구-투표소 선관위원 또는 투표사무원들에게 모바일 메시지로 1회 발송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금속노조 중앙선관위 결정으로 금속노조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같은 모바일 메시지를 1회 발송할 수 있습니다.

11.10(금)

· 민주노총 후보자 선거공보물 현장배부

- 민주노총 중앙선관위는 민주노총 후보자의 선거공보물인 포스터·정책자료집 인쇄물을 **각 지회(분회 및 위원회 포함)과 지부 모두에 발송**합니다. 본 선거공보물의 현장 도착은 11월 10일(금)으로 예상됩니다. 각 지회(분회 및 위원회 포함)는 이를 부착 또는 비치합니다.
- 민주노총 중앙선관위는 10월 30일(월)까지 취합한 **각 투표구-투표소 선관위원 또는 투표사무원들**에게 본 선거공보물 배포 안내 **모바일 메시지**를 1회 발송할 예정입니다.

11.13(월)

· 선거인명부 확정

- **11월 10일(금) 18시부터** 지부 담당자의 명부 시스템을 사용 계정의 모든 권한 부여가 폐쇄됩니다. **11월 10일(금) 18시부터 11월 13일(월) 14시까지는 금속노조 중앙선관위만 명부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11월 13일(월) 14시부터 금속노조 중앙선관위의 명부 시스템 사용 계정도 폐쇄됩니다.

11.14(화) ~ 11.20(월)

· 현장투표 준비① 안내문 등 현장공고

금속노조(지역지부 동시) 선거의 현장투표 준비

- **각 지회(분회 및 위원회 포함) 선관위**는 아래와 같이 조합원에게 공고_서식별도 안내 합니다. 공고 방법은 조합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투표 일시 및 장소를 **3일 전**에 부착·게시하는 것입니다.
 - 11.21(화)를 현장투표 첫날로 정한 지회(분회 및 위원회)는 현장공고문을 11.18(토) 전에 조합원에 공고해야 합니다.
 - 11.22(수)를 현장투표 첫날로 정한 지회(분회 및 위원회)는 현장공고문을 11.19(일) 전에 조합원에 공고해야 합니다.
 - 11.23(목)를 현장투표 첫날로 정한 지회(분회 및 위원회)는 현장공고문을 11.20(월) 전에 조합원에 공고해야 합니다.
 - 11.24(금)만 현장투표 날로 정한 지회(분회 및 위원회)도 현장공고문을 11.20(월) 전에 조합원에 공고해야 합니다.
- 각 지회(분회 및 위원회 포함) 선관위가 위 투표 시간을 조정할 시에도 반드시 사전에 조합원들에게 3일 전에 공지해야 합니다.
- 투표기간과 시간을 사전 공지했음에도 투표를 하지 못한 조합원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회(분회 및 위원회) 선거의 현장투표 준비

- 자체 규칙 및 세칙이 정한 바대로 공고합니다.

민주노총(지역본부 동시) 선거의 현장투표 준비

- **각 지회(분회 및 위원회 포함) 선관위**는 아래와 같이 조합원에게 공고_서식별도 안내 합니다. 공고 방법은 조합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 전**에 부착·게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11.21(화)를 현장투표 첫날로 정한 지회(분회 및 위원회)는 현장공고문을 11.14(화)에 조합원에 공고해야 합니다.
 - 11.22(수)를 현장투표 첫날로 정한 지회(분회 및 위원회)는 현장공고문을 11.15(수)에 조합원에 공고해야 합니다.
 - 11.23(목)를 현장투표 첫날로 정한 지회(분회 및 위원회)는 현장공고문을 11.16(목)에 조합원에 공고해야 합니다.
 - 11.24(금)를 현장투표 첫날로 정한 지회(분회 및 위원회)는 현장공고문을 11.17(금)에 조합원에 공고해야 합니다.
 - 11.25(토)를 현장투표 첫날로 정한 지회(분회 및 위원회)는 현장공고문을 11.18(토)에 조합원에 공고해야 합니다.
 - 11.26(일)를 현장투표 첫날로 정한 지회(분회 및 위원회)는 현장공고문을 11.19(일)에 조합원에 공고해야 합니다.
 - 11.27(월)만 현장투표 날로 정한 지회(분회 및 위원회)는 현장공고문을 11.20(월)에 조합원에 공고해야 합니다.

11.14(화) ~ 11.20(월)

· 현장투표 준비② 선거인명부 준비

금속노조(지역지부 동시) 선거의 현장투표 준비

- **금속노조 중앙선관위**가 민주노총-금속노조 선거관리시스템에서 명부를 지부별 PDF파일로 내려 받고(자동 시스템) 이를 지회(분회 및 위원회 포함)별로 분류해 **지부에 각 지부 소속 지회 PDF파일들을 전달**합니다. 해당 PDF파일에는 투표구와 투표소별로 페이지(Page)가 나뉘지며 각 페이지에는 연번-단위조직-투표구-투표소-이름-서명칸이 함께 표기되며, 휴대전화번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각 표지 및 제목에 금속노조라 표기됩니다.

- **각 지회(분회 및 위원회 포함) 선관위**가 금속노조 지부로부터 배부받은 PDF파일을 각기 출력해 현장투표 용 선거인명부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본 선거인명부는 11/13(월)에 확정된 명단 중 현장투표자에 한한 명단입니다. 11/13(월) 이후에 발생한 노조 탈퇴 및 징계라는 특수한 상황에 의한 명단 삭제 외에는 누구도 임의로 조합원 명단을 추가 기재(임의로 등재)하면 안 됩니다.

지회(분회 및 위원회) 선거의 현장투표 준비

- 위 금속노조 지부 배부 선거인명부를 1부 더 출력 또는 복사를 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단, 금속노조 지부 배부 선거인명부와 일치한다면, 자체적으로 마련한 명부를 써도 됩니다.

민주노총(지역본부 동시) 선거의 현장투표 준비

- 각 지회(분회 및 위원회 포함)의 민주노총(지역본부 동시) 선거 현장투표 선거인명부는 **민주노총 각 지역본부에서 출력하여 배부하는 것만** 써야 합니다. 이 명부는, 금속노조 지부 배부 명부와 다릅니다.
- 민주노총 지역본부가 각 지회(분회 및 위원회 포함)에 **11월 14일(화) ~ 11월 20일(월)** 동안 이 명부를 배부할 예정이니, 민주노총 선거를 현장투표로 준비하는 **각 지회(분회 및 위원회 포함) 선관위**는 이를 반드시 교부받아야 합니다.
- 그리고 본 민주노총 선거 현장투표 선거인명부는 **투표 종료 후 민주노총 지역본부에 회송**해야 합니다

11.14(화) ~ 11.20(월)

· 현장투표 준비③ 투표함 준비

금속노조(지역지부 동시) 선거의 현장투표 준비

- **각 지회(분회 및 위원회 포함) 선관위**가 자체 마련한 투표함으로 선거를 치룹니다.
단 금속노조 중앙선관위는, 자체 마련이 여의치 않은 곳에 한해, **10/31(화)까지 신청을 받아 통일된 1회용 종이 투표함을 제작해 지부를 통해 별도 지원도 부분적으로 병행할 예정입니다.**

지회(분회 및 위원회) 선거의 현장투표 준비

- **각 지회(분회 및 위원회 포함) 선관위**가 자체 마련한 투표함으로 선거를 치룹니다.

민주노총(지역본부 동시) 선거의 현장투표 준비

- 각 지회(분회 및 위원회 포함)의 민주노총(지역본부 동시) 선거 현장투표 투표함은 **민주노총 각 지역본**

부에서 배부하는 것만 써야 합니다.

특히, 민주노총 현장투표의 경우, 하루 투표라 하더라도 중간에 투표 중단 시간이 있으면 중단 뒤 재개 하는 투표는 새로운 투표함으로 합니다. 즉, 민주노총 현장투표의 경우 투표 중간 중단 뒤 새로 재개하면 새로운 투표함으로 현장투표를 해야 하므로 투표함이 여러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투표함은 민주노총 지역본부에서 배부한 투표함만 유효합니다.

- 민주노총 지역본부가 각 지회(분회 및 위원회 포함)에 **11월 14일(화) ~ 11월 20일(월)** 동안 이 투표함을 배부할 예정이니, 민주노총 선거를 현장투표로 준비하는 **각 지회(분회 및 위원회 포함) 선관위**는 이를 반드시 교부받아야 합니다.
- 그리고 본 민주노총 선거 현장투표 투표함은 **투표 종료 후 민주노총 지역본부로만 회송**해야 합니다.

11.14(화) ~ 11.20(월) · 현장투표 준비③ 투표용지 준비

금속노조(지역지부 동시) 선거의 현장투표 준비

- 금속노조 중앙선관위가 선거인명부 보정이 완료된 10월 30일(월) 현재 기준 금속노조 투표방법이 현장투표인 선거인 수 대로 인쇄하여 지부에 11월 10일(금)까지 배부한 투표용지로만 사용합니다. **지부는 이를 11월 14일(화)부터 지회(분회 및 위원회)에 배부**합니다.

지회(분회 및 위원회) 선거의 현장투표 준비

- **각 지회(분회 및 위원회 포함) 선관위**가 자체 마련한 투표용지로 선거를 치룹니다.

민주노총(지역본부 동시) 선거의 현장투표 준비

- 민주노총(지역본부 동시) 선거 현장투표 투표용지는 **민주노총 각 지역본부에서 배부하는 것만** 써야 합니다. 이 외에도, 민주노총 선거 현장투표에는 **민주노총 각 지역본부로부터 일일투표록, 투표결과보고서, 회송봉투 등도 미리 교부받아 준비**해야 합니다. 이 각각도 모두 투표 종료 뒤 민주노총 지역본부에 회송시켜야 합니다.

11.14(화) ~ 11.20(월) · 현장투표 준비④ 투표동선 마련 (금속노조지회민주노총 동시 투표 시)

- 지회(분회 및 위원회 포함) 선거, 금속노조(지부 동시) 선거, 민주노총(본부 동시) 선거의 각 현장투표의 기표 완료된 투표용지는 투표함에서 섞이면 절대 안 됩니다. 때문에, **두(2)~세(3) 종류의 선거를 같은 날에 동시에 하려 할 경우 아래와 같이 현장투표 동선을 미리 마련해둬야** 합니다.

지회 선거의 선거인명부 서명 ⇨ 기표 ⇨ 지회 투표함에 투함 ⇨ 금속노조 선거의 선거인명부 서명 ⇨ 기표 ⇨ 금속노조 투표함에 투함 ⇨ 민주노총 선거의 선거인명부 서명 ⇨ 기표 ⇨ 민주노총 투표함에 투함

각 지회(위원회 및 분회 포함)가 별도 준비할 실무 조치는 없습니다. 단, 아래 사항만 사전에 조합원에게 안내해두면 됩니다. ※ 지회(위원회 및 분회 포함) 선거를 모바일 투표로 하려는 곳은 입후보자 정보 등을 투표일 2주 전에 금속노조 중앙선관위에 제공해야 전자투표 시스템 구축이 됩니다(해당 단위에 별도 안내).

대(對) 조합원 모바일 메시지 발송 시간

- 전체 4일 동안 1일 1회 08시 발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단, 지부별 사전 요청으로 지부별 모바일 메시지 발송 시간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 금속노조 중앙선관위 의결로, 필요시 하루 2~3회 모바일 메시지 발송도 가능합니다.

모바일투표 전(前) 본인인증

- 모바일 메시지 발송 시 조합원마다 각기 모두 다른 URL(인터넷주소)이 발송됩니다.
- 단, 전체 선거일 4일 동안 보내지는 각 선거인 별 URL(인터넷주소)은 동일합니다.
- 모바일 메시지를 수신받은 선거인이 모바일 메시지 내용 속 URL(인터넷주소)에 접속한 뒤 [인증요청] 버튼을 누르면, 4자리 숫자 인증번호가 해당 선거인에게 모바일 메시지로 발송됩니다.
- 모바일 메시지로 수신한 인증번호를 본인인증 페이지의 인증번호칸에 입력하면 투표창이 열립니다.

모바일투표 유효시간

- 매일 24시(자정)부터 새벽 04시 사이에는 투표를 할 수 없고, 그 외에는 어느 때나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 단, 위 본인인증이 끝난 뒤에는 30분내에 투표를 완료해야 합니다. 만일 30분 내 투표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본인인증 절차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모바일투표 도중 중단하였을 경우

- 본인인증을 거쳐 투표를 시작했으나 투표 도중 모든 투표행위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표창을 닫고 나갈 경우, 본인인증 절차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 다시 본인인증을 거치면 기존에 진행중이던 투표에 이어서 재개됩니다.
- 투표종단 후 투표 종료일까지 투표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투표 중단 전 완료한 투표는 정상적인 투표로 인정되나 완료하지 않은 투표는 무효표로 처리됩니다.

‘선택하지 않음’ 기표 가능

- 각 선거 문항에는 ‘선택하지 않음’도 기표할 수 있습니다.
- ‘선택하지 않음’에 해당하는 번호를 선택하면 해당 선거에는 무효표로 반영됩니다.

각 지회(위원회 및 분회 포함)가 별도 준비할 실무 조치는 없습니다. 단, 아래 사항만 사전에 조합원에게 안내해두면 됩니다. ※ 지회(위원회 및 분회 포함) 선거를 ARS 투표로 하려는 곳은 입 후보자 정보 등을 투표일 2주 전에 금속노조 중앙선관위에 제공해야 전자투표 시스템 구축이 됩니다(해당 단위에 별도 안내).

대(對) 선거인 안내전화 발신 시간

- 전체 4일 동안 1일 1회 09시부터 순차적 안내전화 발신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단, 지부별 사전 요청으로 지부별 안내전화 발신시간을 매일 달리할 수 있습니다.
- 안내전화 미수신 시 당일 중 안내전화가 재발신됩니다.
- 금속노조 중앙선관위 의결로 필요 시 하루 1회 추가 안내전화 발신도 가능합니다.

ARS투표 전(前) 본인인증

- ARS 전화 안내에 따른 숫자 4자리를 누르면 본인인증으로 갈음합니다.
- 그 뒤 음성 안내에 따라 기표행위를 하면 됩니다.

투표통화 도중 중단되었을 경우

- 투표통화 도중 모든 투표행위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화를 끊었을 경우에는 다음날에 투표해야 합니다.
- 다음 날 미투표자로 분류되어 다시 안내전화를 수신하게 될 것이며, 이 때 기존에 진행중이던 투표에 이어서 투표가 재개됩니다.

‘선택하지 않음’ 기표 가능

- 각 선거 문항에는 ‘선택하지 않음’도 기표할 수 있습니다.
- ‘선택하지 않음’에 해당하는 번호를 누르면 해당 선거에는 무효표로 반영됩니다.

11.21(화)~11.24(금) 금속노조 민주노총 1차 투표기간

11.25(토)~11.27(월) 민주노총 1차 추가 현장투표기간

2023 금속노조 13기

조합·지부·지회 임원 동시선거

후보자 선거운동 관리

후보자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 등록 마감 시간부터 투표일 전일 24시까지입니다.

본 지침서에는 각급 선거사무 담당자 및 후보자가 필수적으로 알아둬야 할 사항(개요)에 한해 담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외 사항은 금속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결 지침에 따릅니다.

금속노조 선거관리규정

※ 지부 임원선거 관련 규정은 선거관리규정 58조 ~ 68조 참고

제21조(입후보자 등록) 조합의 임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조합원은 필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하는 입후보 등록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조합원의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하는 조합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에 동반 입후보(러닝메이트)하려는 조합원과 부위원장 후보에 입후보하려는 조합원은 선거공고 후 10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이 조합 임원에 입후보할 때는 선거공고 후 3일 이내에 사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등록요건을 갖추었을 때 즉시 등록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4. 조합원은 조합 임원으로 입후보할 경우 지부 임원선거에 동시 입후보할 수 없다.
5.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1통, 조합 활동 경력소개 1통이다.

제22조(입후보자의 공고)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하였을 때는 서류심사 후 소속, 성명, 성별, 연령, 조합경력 등을 등록 마감 다음 날부터 공고하여야 한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 입후보등록 후 동반 출마하는 후보 중 결원 또는 유고 발생 시 등록 무효로 처리한다.

제23조(보완지시 불응에 대한 처리)

1. 입후보 등록신청서가 관계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등록 3일 이내에 명하고 명한 날로부터 24시간 이내 시정 또는 보완되지 않을 경우 입후보 자격이 상실된다.
2. 제31조(금지사항)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에게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통보하고 유인물을 통해 공식 사과토록 해야 하며 주의를 준다.
3. 위 2항의 명령을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고를 주고, 그 사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조합원에게 공개한다.(공개방식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4. 경고 처분을 받은 입후보자가 추가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후보자 자격상실을 의결할 수 있다.

제24조(선거운동 기간)

1. 선거운동 기간은 입후보자 등록 기간을 마감한 시간부터 투표 전일까지로 하고 조합은 입후보자가 합법적 선거운동을 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제1항의 선거운동 기간 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입후보를 위한 사전 준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5조(선거공보)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 임원선거에 입후보한 조합원의 기호, 사진, 성명, 주소, 연령, 경력 및 공약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후보별 동일 규격으로 선거운동 기간 중 공고형과 자료형으로 2종을 발행·배부하여야 한다.
2. 조합 임원선거 입후보자는 제1항의 공고형 및 자료형 공보 편집파일을 등록 마감 시간 후

- 48시간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선거공보에 게재할 후보자에 기호는 추첨하여 결정한다.

제26조(홍보물)

1. 후보자는 개인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단, 홍보물의 종류 및 배포 횟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입후보자들의 의견을 받아 결정한다.
2. 개인 홍보물에는 허위사실이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3. 조합원 누구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홍보물 외 선거 관련 홍보물은 제작·배포할 수 없다.

제27조(합동연설회)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 임원 입후보자의 합동연설회를 지부 단위로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 일시, 장소, 연설 시간을 공고하고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합동연설회에서 연설순서는 연설회마다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4. 후보자가 합동연설회 개최 시마다 1인에 한하여 찬조 연설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찬조 연설은 모든 후보자의 연설이 끝난 뒤 실시하며 순서는 당해 후보의 연설순서에 따른다. 찬조연설자의 자격은 조합원으로 한다.
5. 후보자가 찬조연설자를 두는 경우 그 명단을 합동연설회 개최 전날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후보자 또는 찬조연설자가 타 후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 또는 중상모략하는 내용을 발표할 때는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그 요구에 불응할 때는 연설을 중지시켜야 한다.

제28조(개인 연설회 제한)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개인 연설회를 개최할 수 없다.

제29조(입후보자 방문 선거운동) 조합 임원선거 입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은 산하 조직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원 등록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한 이유로 이를 금지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각 단위 선출직 임원은 선거운동원 등록을 금지한다.

제30조(선거비용의 공영제) 직접 선출하는 조합 임원의 선거 활동에 필요한 선거비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편성하고 중앙위원회에서 승인하며, 선거공영제를 원칙으로 한다.

제31조(금지사항) 선거운동 기간 중 입후보자 또는 조합원들이 선거에 관하여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사용자의 지원을 받거나 개입을 유도하는 행위.
3. 폭력, 협박, 납치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4.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5.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등을 약속하는 행위.
6.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 중상모략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7. 기타 규약이나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2

후보자 등록

- 조합·지부(동시의 경우) 임원 **후보자 등록 마감은 10월 30일(월) 14시**입니다. 이때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등록신청서 1통 (선거관리 각종 서식 별도 안내).
 - * 조합활동 경력소개 1통 : 입후보자 등록공고문에 넣을 경력 사항을 짧게 3줄 이내로 제출.
 - * 위 등록 서류 외에도 금속노조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할 사진과 약력, 슬로건, 공약을 아래 양식대로 제작 또는 작성해 USB 메모리에 저장해 제출(담당자의 휴대전화 번호 반드시 명기).
- 1) 사진 : 명함판 규격(가로:세로=5:7)에 jpg 파일로 제출.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과 부위원장 후보 모두 개인 증명사진(인물사진)을 제출.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 후보는 개인 증명사진과 별도로 3명이 함께 찍은 가로 형식의 사진 파일도 제출함.
 - 2) 약력 : 10줄 이내
 - 3) 슬로건 : 메인 슬로건 1개
 - 4) 공약 : A4 용지 1장 이내
- 위 서류 제출자는 후보자 당사자가 아니라도 후보자를 대리할 만한 조합원은 누구라도 가능합니다. 단, 직접 와서 제출해야 하고(팩스, 이메일 등 불가) 당사자가 아닌 경우 위임장을 별도 제출받아야 합니다.
 - 금속노조 중앙 및 지부 선관위는 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하거나 동반 출마한 후보 중 일부의 결원(유고)이 발생하여 등록이 무효가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합니다. 여기서 ‘지체없이’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사안이 발생한 즉시로 해석합니다.
 - 입후보자 등록신청서가 관계 규정에 저촉돼 중앙(지부)선관위로부터 시정 혹은 보완 명령이 있었음에도 명령 24시간 이내에 시정 또는 보완하지 않는 경우 입후보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이때 선관위는 시정 혹은 보완 명령을 후보자 등록 마감 이후 3일 이내에 시행).

3

후보자-선관위 합동회의

※ 후보자등록 마감(14시) 이후 14시 30분에 후보자들과 아래와 같이 모임(합동회의)을 개최합니다.

- **후보자 기호 추첨** : 후보자등록신청서 접수 순서대로 추첨합니다.
- **선거운동원 패찰 교부와 안내** : 사전 제작해 둔 선거운동원 패찰을 아래와 같이 후보자들에게 교부하고 선거운동원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과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 위-수-사의 경우 선대본별로 30개의 선거운동원증 교부, 부위원장은 후보자별로 10개의 선거운동원증을 교부, 지부 임원의 경우 지부 선관위가 정함.
 - * 별도 절차 없이, 선거운동원증을 패용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이를 선거운동원으로 간주함.
 - * 선거운동원은 규정상 금지된 사항을 제외하고 후보자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의 활동을 할 수

있음. 임원 후보와 선거운동원은 동일한 어깨띠와 단체복(조끼 포함) 등을 착용할 수 있음.

- * 각 단위 선출직 임원이 선거운동원증을 패용하는 등 선거운동을 할 경우 선거관리규정 29조 및 66조 위반이므로 이는 금지함.

○ **현장 선관위 명단 교부** : 10월 30일까지 취합한 투표구투표소 선관위원 투표사무원 명단을 후보자에게 교부합니다.

- * 입후보자의 개별 현장 방문은 허용하되, 본 현장 선관위와의 일정 협의를 통한 함. 각 현장 선관위는 후보자의 현장방문 선거운동에 최대한 협조해야 함. 각 현장 선관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후보의 방문만 협조하는 등의 불공정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 각 현장 선관위의 후보자 현장 방문 순회 동행은 선거운동과 무관함.
- * 지부 임원 입후보자의 지회 방문 방식에 대해서는 지부 선관위원회가 정함

○ **선거공보물 작성 및 제출방법 안내** : 선거공보물 제출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 공고형 선거공보란 포스터를, 자료형 선거공보란 정책자료집을 뜻함.
- * 포스터 편집파일 제출 시한 : 11월 1일(수) 14시.
- * 정책자료집 편집파일 제출 시한: 1차는 11월 1일(수) 14시, 2차는 11월 8일(수) 14시.
- * 단, 정책자료집 발간 횟수는 선관위-후보 간담회에서 조율 가능.
- * 포스터에 게재할 내용은 입후보한 조합원의 기호, 사진, 성명, 경력 및 공약사항 등.
- * 포스터와 정책자료집 자료 제출 양식 및 규격은 10월 30일(월) 14:30 선관위-후보자 간담회 전까지 조합 중앙선관위에서 마련함.
- * 지부 임원선거 공보물 형식은 지부 선관위(또는 선관위-후보 간담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 지부 선관위는 지부 임원 후보 공보물 자료를 중앙선관위에 전달함(중앙선관위 홈페이지 게시 목적).
- * 조합 임원 선거에 한한 모든 선거공보물을 열람할 수 있는 조합 선관위 홈페이지 해당 주소를 10월 30일(월)까지 취합한 각 투표구-투표소 선관위원 또는 투표사무원들에게 모바일 메시지로 1회 발송할 예정임. 추가로, 금속노조 중앙선관위 결정으로 금속노조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같은 모바일 메시지를 1회 발송할 수 있음.

○ **합동연설회 및 정책토론회 안내** : 아래 별도 설명.

○ **개인홍보물 및 홈페이지를 활용한 선거운동 안내** : 아래 별도 설명.

○ **선거운동 금지사항 안내** : 아래 별도 설명.

4 선거운동의 개념과 선거운동 기간

○ 선거운동이란 후보자를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적극적 행위를 뜻합니다.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 그 자체만으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 * 조합원 누구나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거나 반대한다는 단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음. 이를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리하지 않음.

- *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해 달라고 ‘호소’ 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간주됨. 대표적으로, 지지나 반대입장을 널리 알리기 위해 선전물을 배포하거나 SNS에 글을 올리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간주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관리 대상이 됨.
- 조합·지부 임원 입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등록 마감 일시인 **10월 30일(월) 14시부터 투표일 전날인 11월 20일(월) 자정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 공휴일에도 선거운동은 가능합니다.
 - * 후보등록 마감 일시와 투표일이 다른 경우 그에 따름.
 - * 결선(2차 또는 3차) 투표가 진행될 시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별도 안내함.

5 합동연설회 및 정책토론회 등

- 조합 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 개최를 희망하는 지부의 선관위는 10월 26일(목)까지 조합 중앙 선관위에 원하는 일시·장소를 기재해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중앙선관위는 접수된 신청을 종합·조율해 합동연설회 일정 초안을 수립하고 **10월 30일(월) 14시 30분 중앙선관위 후보자 간담회에서 연설회 최종 일정을 확정**해 안내합니다.
 - * 합동연설회 준비와 진행은 해당 지부 선관위가 책임짐.
 - * 지부 선관위 외 다른 단위 요청(예 : 각종 업종·부문 위원회 행사를 겸한 연설회 요청)이 접수될 경우 중앙선관위와 후보자가 협의해 연설회를 배치할 수 있음.
 - * 합동연설회에는 조합원 1인에 한해 찬조연설원을 둘 수 있음. 후보자는 찬조연설원의 명단을 연설회 개최 전날 17시까지 해당 지부 선관위에 제출해야 함.
- 조합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 선거에 한해 중앙선관위 주관으로 정책토론회를 1회 실시합니다. 정책토론회 일시·장소를 포함한 세부 기획은 **10월 30일(월) 중앙선관위 후보자 간담회에서 최종 확정**합니다.
 - * 정책토론회는 영상으로 촬영해 선관위 홈페이지에 유튜브 링크로 게시함.
 - * 해당 유튜브 링크 주소는 10월 30일(월)까지 취합한 각 투표구·투표소 선관위원 또는 투표사무원들에게 모바일 메시지로 1회 발송할 예정. 추가로, 금속노조 중앙선관위 결정으로 금속노조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같은 모바일 메시지를 1회 발송할 수 있음.
- 선관위가 주관하지 않는 각종 온·오프라인 토론회·좌담회·인터뷰 등은 선관위 사전 승인을 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선관위는 기획안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각 후보자와 협의해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이를 최대한 허용합니다.
- 특정 후보(들)만을 위한 개인 연설회는 선거관리규정 28, 65조에 따라 금지합니다.

6

개인홍보물 및 홈페이지를 활용한 선거운동

- 입후보자의 개인 홍보물은 아래를 논의 기준으로 삼아 종류와 발행 횟수, 기타 각종 제한 사항 등을 **10월 30일(월) 14시 30분 중앙(지부)선관위의 간담회에서 최종 결정**합니다.
- * 명함 형식 홍보물은 종류와 색도, 부수에 제한을 두지 않음.
- * 종이 유인물 형식 개인 홍보물의 종류, 사이즈, 색도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횟수는 선관위-후보자 합동회의에서 정함.
- * 동영상 홍보물의 재생 시간은 5분 이내로 제한되며 횟수는 선관위-후보자 합동 회의에서 정함.
- * 피켓은 사이즈, 색도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개수는 선거운동원(파찰 배부 개수) 수의 절반을 넘을 수 없음.
- * 현수막은 사이즈, 색도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개수는 선거운동원(파찰 배부 개수) 수를 넘을 수 없음.
- * 카드뉴스를 비롯한 각종 SNS 배포 게시물은 모두 제한을 두지 않음.
- * 모든 종류(명함, 유인물, 동영상, 카드뉴스, 피켓, 현수막, SNS 게시물 등)의 홍보물은 전 반드시 선관위 검인을 받아야 함. 검인 방법은 선관위-후보자 합동회의 때 따로 안내함. 입후보자는, 검인을 득한 홍보물을 선관위 홈페이지 후보 게시판에 반드시 등록해, 조합원들이 검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 위 각 개인 홍보물은 제작·배포는 각 선대본에서 담당하며 제작·배포 비용 역시 각 후보자들이 부담함.
- * 단체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한 선거운동은 금함. 단, 위수사 후보조에 한해, 중앙선관위 명의로 각 후보조의 선거운동 문자 발송을 공식 대행해 주며, 이때 비용은 해당 후보자가 부담함. 이 횟수는 1회를 기본으로 하되 선관위-후보자 합동 회의에서 정함. 이는, 민주노총-금속노조 선거 시기 무분별한 문자 발송을 억제하기 위함이며 민주노총-금속노조 선거인명부 제출 시 담긴 휴대전화번호 유출이라는 조합원들의 불신 제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임(중앙선관위는, 조합원 전화번호 유출이 원천 불가능하며 중앙선관위 번호가 아닌 문자 발송은 선관위 보유 선거인명부와 무관하며 이는 금지 위반임을 지속 안내할 것임).
- * 그 외,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이 착용할 단체복, 조끼, 어깨띠 등은 개인 홍보물로 보지 않아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나, 규약·규정에 반하는 내용이 적시된 사실이 확인되면 선관위 의결로 제재할 수 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 후 빠른 시일 내에 홈페이지를 개설하며, 선관위-후보자 간담회 직후 홈페이지에 선대본이 각종 홍보물을 검인 후 게시할 수 있도록 계정을 부여할 것입니다. 또한 익명 게시가 가능한 조합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은 선거기간 운영하지 않습니다.
- 후보 선대본은 페이스북 페이지 등을 개설해 활용할 수 있으나, 별도의 선대본 홈페이지 개설은 금지합니다.

7

그 외 선거운동 관련 금지사항

- 중앙(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규정(24(61)조 2항, 26(63)조 2·3항, 28(65)조, 31(68)조)에서 금지한 사항 외에는 선거운동을 최대한 허용하되, 아래 기준(안)을 참고해 **10월 30일(월) 중앙(지부)선관위 후보자 간담회에서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금지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 * 후보 간 명확한 구분을 위해 각 후보는 본인 기호(번호) 이외의 번호를 사용하거나 타 후보(조)와 동일한 복장(어깨띠, 조끼 등)을 착용할 수 없음.
 - *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은 이동식으로만 허용하며, 상시 게시할 수 없음.
 - * 개인 홍보물의 SNS 게시물은 검인을 위해 선관위에 제출한 것과 동일해야 함.
 - * 선관위 검인을 득한 개인홍보물이라 하더라도 조직(지부, 지회, 분회, 위원회 등의) 단체 채팅방 등 대화형(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한 일체의 선거운동은 금지함. 단체 채팅방과 대화형 SNS는 조직적 방침이나 결정을 전달하는 수단이기 때문임. 반면, 현직 각급 선출직 임원을 제외한 조합원 누구라도 개인 트위터, 개인 페이스북(페이지 포함), 개인 카카오톡, 개인 카카오톡·텔레그램 채널, 각종 SNS의 개인 프로필 사진 등을 이용한 의사표현은 가능하며 선관위가 공지한 공보물 중 특정 후보 부분만 발췌해 개인적으로 같은 의사표현을 한 경우도 가능함.
 - * 후보(조) 및 선거운동원의 앱프나 방송시설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를 원칙으로 함. 단, 조직(지부, 지회, 분회, 위원회 등의) 공식 행사(회의, 집회, 모임 등)에 참여해 후보자에 발언권이 주어졌을 경우는 예외로 하며, 이때 타 후보자가 같이 참여한 경우 공정하게 발언권을 줘야 함.
 - * 각 단위 선출직 임원은 절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각종 공보물이나 후보자 개인 홍보물에 선출직 임원의 지지 글을 포함해서도 안 됨.

8

위반 시 조치 사항

- 금속노조 중앙선관위는 후보자가 선거관리 규정 제23조 2항의 명령을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고하고, 즉시 그 사실을 직접 조합원에게 공개합니다.
 - * 금속노조 중앙선관위원장 명의로 각 지부에 해당 사항을 알리는 내용의 공문(공고 첨부)을 발송하고 이를 선관위 홈페이지(선관위 게시판)와 노조 홈페이지(공지 사항 및 공문철)에 게시합니다. 지부 선관위 역시 같은 날 중앙선관위 공문을 지부 홈페이지(공지 사항)에 게시합니다.
 - * 금속노조 중앙선관위 의결로, 10월 30일(월)까지 취합한 각 투표구·투표소 선관위원 또는 투표사무원들 전체에게 본 사항을 모바일 메시지로 추가 안내할 수 있습니다.
 - * 금속노조 중앙선관위 의결로, 조합원 전체 또는 특정 투표구(소) 조합원에게 모바일 메시지로 본 사항을 직접 안내할 수 있습니다.

- 금속노조 중앙선거위는 후보자가 아닌 조합원이 선거관리규정 및 본 지침서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해당 조합원에 경고하고, 그 사실의 조합원 공개 여부를 중앙선거위 의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금속노조 중앙선거위는 해당 사례를 모아 추후 조합 징계위에 제소할 수도 있습니다.
- 아래의 경우 입후보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 * 선거운동 관련 금지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해 유인물을 통한 공식 사과(주의) 또는, 해당 단위 선거위의 직접 조합원 공개(경고) 뒤에도 추가 위반사항이 발생해 중앙(지부)선거위가 자격상실을 의결한 경우.

투표기간 선거관리업무

현장투표 관리

금속노조(지역지부 동시) 선거의 현장투표 관리

- 금속노조 지부에서 배부하여 출력한 선거인명부에 임의로 조합원을 추가 기재하면 안 됩니다.
 - * 선거인명부는 11/13(월)에 확정된 명단에 의거하며, 명단 확정 이후 조합 탈퇴 및 징계 등에 따른 명단 삭제 외에는 누구도 임의로 추가기재(임의로 등재) 등의 수정을 할 수 없음.
 - * 선거인명부에 혹시 빠진 조합원이 발견되더라도 이번 선거 재적에 포함될 수 없음.
 - * 선거인명부 확정 이후 조합 탈퇴 및 징계에 따른 명단 삭제법은 별도 안내 예정.
- 현장투표 시 기표방법은 기표봉(사람인(人) 또는 원형(O)이 찍히는 도장)에 잉크(인주)를 묻혀 기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가피하게 다른 방식으로 기표해야 하는 경우 해당 단위 선관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선관위 승인 없이 다른 방법으로 기표된 투표용지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 투표 시에는 투표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투표참관인이 없을 경우 지회 선관위원장으로 대신 할 수 있습니다.
- 금속노조(지부 동시) 선거를 위한 투표함은 지회 선관위에서 결정하고 제작합니다.
 - * 단 금속노조 중앙선관위는, 자체 마련이 여의치 않은 곳에 한해, 10/31(화)까지 신청을 받아 통일된 1회용 종이 투표함을 제작해 지부를 통해 별도 지원도 부분적으로 병행할 예정.
- 단위조직(지회, 분회) 선관위는 투표함 이상 유무를 투표참관인에게 확인 후 투표를 진행해야 합니다.
- 투표를 하지 않는 시간대 투표함은 해당 단위조직 선관위원장(또는 선관위원)의 직인(또는 서명)을 기재한 후 봉인해 보관하고, 투표 재개시 해당 선관위 확인하에 봉인을 해제합니다.
- 지회 선관위는 당일 투표 시간이 종료되면 투표함을 봉인하고 선거인명부(서명지)와 잔여 투표용지가 유실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 투표 기간 종료 후 단위조직(지회, 분회) 선관위에서 진행해야 할 선거사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 * 투표록을 작성해 지부 선관위에 보고 ⇨ 지부 선관위는 각 지회 투표록을 취합해 중앙선관위에 보고
 - * 잔여 투표용지와 절취하고 남은 일련번호지를 적절한 봉투에 넣어 봉인하며, 봉투에 남은 투표용지 수 표기.

- * 투표함은 모서리 및 봉합선을 전부 봉인한 후 봉인 부위에 지회 선관위원장, 투표참관인 날인(서명).
- * 선거인명부(서명지), 투표함, 투표록, 잔여투표용지(일련번호지 포함) 등을 지부선관위에 송부.

지회(분회 및 위원회) 선거의 현장투표 관리

- 각 지회(분회 및 위원회 포함) 규칙 및 세칙이 정한 대로 합니다.

민주노총(지역본부 동시) 선거의 현장투표 관리

- 금속노조 선거의 현장투표 관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 투표함 관련해 아래 사항은 금속노조 현장투표 관리와 다른 점입니다.**
 - * 매회의 현장투표가 끝날 때마다 투표함을 봉인해야 하며 1회 1개 투표함을 사용해야 함. 즉, 현장투표 일시가 3회인 경우 3개의 투표함을 사용해야 함.
 - * 하루에 투표종단 시간(가령 식사시간 등)이 있는데 교대로 관리할 투표구선관위원이 없을 경우 투표종단과 함께 투표함을 봉인해야 하며 새로운 투표개시 때도 새로운 투표함을 사용해야 함. 즉, 하루에도 2개 이상의 투표함이 사용될 수 있음.
- 또한 민주노총 선거 현장투표의 경우 **각 투표구(소) 선관위원 또는 투표사무원이 일일 투표율을 매일 16시 금속노조 중앙선관위로 보고해주야** 합니다.
 - * 민주노총 차원의 전체 7일의 선거일에도 불구하고 전국 전체 투표율이 과반에 미달할 경우 또는 특정 지역 투표율이 과반에 미달할 경우 민주노총 중앙선관위 의결로 11/28(화)~12/2(토) 중 해당 선거구 투표를 1일 내지 5일 연장함.
 - * 민주노총 중앙선관위는 선거일 마지막날인 11월 27일(월) 16시~17시 중 현장투표 투표율과 전자투표 투표율(중앙 집계)을 합산하여 투표율 과반 여부를 확인함. 연장투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민주노총 중앙선관위는 연장투표를 의결하여 공고함. 단, 이때 투표율을 감안하여 연장투표 기간을 정함
 - * 따라서 중앙 집계되는 전자투표가 아닌 현장투표 투표율은 매일 16시에 **단위조직 → 금속노조 각 지부 → 금속노조 중앙선관위 → 민주노총 중앙선관위로 보고되도록** 해야 합니다.
- 민주노총 선거 현장투표 시 사용한 일일투표록, 투표 최종 결과 보고서, 투표함과 투표관계서류 등은 모두 민주노총 지역본부가 배부한 것으로만 쓸 수 있고, 투표를 마친 뒤 소속 금속노조 지부가 아닌 해당 민주노총 지역본부로만 송부해야 합니다.

금속노조-민주노총 동시 현장투표 시

- 민주노총 직선, 조합 선거를 같은 기간에 모두 현장투표 방식으로 실시하는 단위는 두 선거의 조합원 서명용 선거인명부를 반드시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 * 민주노총 직선을 위한 선거인명부는 민주노총 지역본부가 11월 14일(화) 출력해 투표소에 배부함.
 - * 조합 선거를 위한 선거인명부는 금속노조 지부가 파일로 전달하며, 이를 출력해서 사용함
- **민주노총 직선 조합 선거를 같은 일시에 모두 현장투표 방식으로 실시하는 단위**는 아래와 같이 민주노총 직선과 조합 선거의 투표절차(선거인명부 서명부터 투표용지의 투표함 투입까지의 행위)를 순차적으로 완전히 분리해 실시해야 합니다.
- * [1] 조합원이 금속노조 선거인명부를 확인. 선관위원회는 조합원 신분을 확인.
 - * [2] 조합원이 조합 선거인명부 본인 서명란에 서명 또는 날인.
 - * [3] 선관위원회가 조합 투표용지의 일련번호, 날인 등 인쇄상태 확인.
 - * [4] 선관위원회가 절취선에 따라 잘라낸 조합 선거(중앙·지부·지회 임원 선거) 투표용지들을 조합원에게 교부.
 - * [5] 조합원이 조합 선거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로 이동해 지정된 도구로 기표.
 - * [6] 조합원이 기표한 조합 선거 투표용지를 접어 조합 선거 투표함에 투입.
 - * [7] 조합원이 민주노총 직선 선거인명부를 확인. 선관위원회는 조합원 신분을 확인.
 - * [8] 조합원이 민주노총 직선 선거인명부 본인 서명란에 서명 또는 날인.
 - * [9] 선관위원회가 민주노총 직선 투표용지의 일련번호, 날인 등 인쇄상태 확인.
 - * [10] 선관위원회가 절취선에 따라 잘라낸 민주노총 직선(총연맹 중앙·지역본부장 선거) 투표용지들을 조합원에게 교부.
 - * [11] 조합원이 민주노총 직선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로 이동해 지정된 도구로 기표.
 - * [12] 조합원이 기표한 민주노총 직선 투표용지를 접어 민주노총 직선 투표함에 투입.

전자투표 관리

- 금속노조 각 지부 및 지회, 또는 현장 선관위원회가 투표기간에 전자투표를 관리할 사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현장투표 시 민주노총 만의 제도

1 투표 참관제

- 각 현장투표소마다 후보자별로 1인씩 참관인을 두어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사전에 11월 6일 ~ 11월 12일 사이에 참관 제한 투표소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참관의 예외를 허용합니다.

2 현장투표소 미설치 시 조치

○ 이미 보고 완료된 현장투표 투표구·투표소의 투표 일시장소에 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았음을 민주노총 지역본부가 확인하였고 그 확인 시점에 전체 선거일이 남아있을 경우, 해당 선거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선거일 전날(11/20)까지 현장투표용품 수령을 하지 않은 곳도 동일 조치를 취합니다.

- * 해당 선거인(들)을 모바일투표로 정정해 남은 선거기간에 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당 단위조직과 시급히 협의.
- * 위 협의가 완료되면, 선거관리시스템에서 해당 선거인에게 모바일 메시지 통지확인을 통해 투표방법을 일제히 현장투표→모바일투표로 정정. 단 이때, 휴대전화번호 미등록자는 재적에서 제외
- * 이미 배부된 해당 투표소의 현장투표 선거인명부·투표함·투표용지는 자동 폐기 처리.

3 현장투표 당일 투표장소 변경 시

○ 이미 보고 완료된 현장투표 투표구·투표소의 투표 일시장소에 투표소 설치가 불가능한 부득이한 경우(가령, 야외장소로 예고했으나 날씨 등의 이유로 실내로 옮겨야 하는 경우), 민주노총 선거관리규정 52조 2항 내지 3항대로, 지역본부선관위에 단위조직이 변경장소를 사전에 통지하고, 즉시 선거인에게 변경장소를 공고해야 합니다.

4 일일투표록 및 투표 최종 결과 보고서 작성

○ 단위조직이 정한 현장투표 기간이 종료되면, 매일의 일일투표록과 투표 최종 결과 보고서를 작성 완료하여 각각 1부 복사(단위조직 보관용)합니다. 일일투표록과 투표 최종 결과 보고서에는 출석한 선관위원(또는 투표사무원)이 모두 함께 서명·날인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선관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합니다.

- * 일일투표록과 결과보고서는 민주노총 배부 양식으로 해야 함

5 민주노총 지역본부에 투표함과 투표관계서류 송부

○ 투표 종료 뒤, 잔여투표용지(훼손된 투표용지 포함)와 일련번호가 적힌 용지(이하 투표용지 일체)를 정리합니다. 투표용지 일체, 선거인명부, 일일투표록과 투표 최종 결과 보고서 원본, 투표참관인 대장을 회송봉투에 담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지역본부가 사전 안내한 곳으로 가서 인계하고 인수인계 대장에 서명날인 합니다.

- * 단위조직이 민주노총 지역본부에 투표관련서류 및 투표함을 회송할 때 직접 인계하여야 함(퀵서비스 및 택배서비스 이용금지).

전자투표 시 민주노총 만의 제도

1 전자투표 일일투표율 공개 등

-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체 기간 동안 전자투표 일일 투표율을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을 통해 전체 또는 산별노조 및 지역본부 별로 외부 공개할 수 있습니다.
- 금속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전체 투표소 혹은 특정 투표소에 대한 전자투표 미투표자 명단목록을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 요청을 받은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해당 명단 목록(본 목록에 휴대전화번호는 없음)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위 명단목록 제공 시 해당 선거구의 민주노총 및 금속노조 후보자들에게도 동시에 제공됩니다.

2 선거인명부 확정 이후 선거권이 없어진 자에 대한 조치

- 선거인명부 확정(11.13) 이후에 탈퇴 또는 징계 등의 사유로 선거권이 없어진 조합원이 선거일 기간에 발생할 경우 해당 단위조직은 금속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금속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지할 것이며,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선거관리시스템에서 해당자를 직접 재적에서 제외합니다.

전체 투표율 관리

-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의결을 통해 선거일 전체 기간 동안 현장투표·전자투표 합계 투표율을 전체 또는 산별노조 및 지역본부 별로 외부 공개할 수 있습니다.
-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의결을 통해 선거일 전체 기간 동안 현장투표·전자투표 합계 투표율을 산별노조의 지역별, 지역본부 내 가맹조직별, 전체 단위조직(투표구) 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투표율 집계시스템을 산별노조(연맹) 및 지역본부에 개방할 수 있습니다.
- 위 투표율 집계시스템이 개방되면 금속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에 부여받은 투표율 조회용 계정을 이용하여 집계시스템에 접속해, 금속노조 지부별, 단위조직(투표구) 별 투표율을 조회해 투표율이 저조한 단위조직(투표구)를 확인하고 투표를 독려할 수 있습니다.

현장투표의 개표관리업무

※ 모바일 또는 ARS 투표의 개표 시 각급 선거사무 담당자의 업무는 없습니다.

금속노조 선거관리규정

※ 지부 임원선거 관련 규정은 선거관리규정 75조 ~ 77조 참고.

제40조(개표관리)

1. 개표관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을 받아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2. 개표할 때에는 투표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다.
3.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종료되는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종료 결과를 보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개표를 실시해야 한다.

제41조(무효투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투표로 간주한다.

1.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인 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후보자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 포함)
4. 지정된 기표 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문형을 기입한 것
5.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제42조(투표 결과 보고)

1.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서식 제8호)
2.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투표용지 및 선거록을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지부별로 봉인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항의 보고를 받고 즉시 후보자별 득표수를 계산, 공표하여야 한다. 이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별 득표수를 함께 발표해야 한다.

현장투표 개표관리

금속노조(지역지부 동시) 선거의 개표 관리

- 개표는 지부별로 모여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부 선관위의 의견을 들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입후보자가 추천한 1인의 개표참관인은 각 지부 선관위에 신고 후 각 개표소(지부)에서 개표를 참관할 수 있습니다.
- 개표참관인은 지부마다 각 후보 진영 당 1명으로 제한합니다.

지회(분회 및 위원회) 선거의 개표 관리

- 각 지회(분회 및 위원회 포함) 규칙 및 세칙이 정한 대로 합니다.

민주노총(지역본부 동시) 선거의 개표 관리

- 민주노총 선거의 개표관리는 민주노총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가 합니다. **민주노총 지역본부 지침 및 요청사항**에 협조 바랍니다.

현장투표함의 개함

금속노조(지역지부 동시) 선거의 투표함 개함

- 지부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함 선포 없이 투표함을 개함할 수 없습니다.
- 개표는 투표종료 시간 후 해당 지부 산하 지회 중 3분의 2 이상의 투표함이 도착했을 때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지부 선관위원장은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 교부 수와 일치하는지 대조해 확인해야 합니다.
- 후보자별 득표수는 지회 단위로 구분해 집계하며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 아래 득표수를 검열해야 합니다.

지회(분회 및 위원회) 선거의 투표함 개함

- 각 지회(분회 및 위원회 포함) 규칙 및 세칙이 정한 대로 합니다.

민주노총(지역본부 동시) 선거의 투표함 개함

- 민주노총 선거의 투표함 개함 관리는 민주노총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가 합니다. **민주노총 지역본부 지침 및 요청사항**에 협조 바랍니다. 단, 민주노총 선거의 투표가 완료된 투표함은 모두 민주노총 지역본부로 송부해야 함을 다시 강조드립니다.

현장투표의 무효투표

금속노조(지역지부 동시) 선거의 무효투표

- 선거관리규정이 정하지 않은 무효투표 논란이 발생했을 때 결정단위는 해당 지부 선관위로 하며 해당 선관위가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중앙선관위가 결정합니다. 이때 **아래 민주노총 선거의 유효/무효 기준을 우선 준용할 계획**입니다.

지회(분회 및 위원회) 선거의 무효투표

○ 각 지회(분회 및 위원회 포함) 규칙 및 세칙이 정한 대로 합니다.

민주노총(지역본부 동시) 선거의 무효투표

○ **투표의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서 선거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 때문에 아래의 경우는 유효로 봅니다. 아래 예시사항에 없거나 판단이 어려운 투표용지는 지역본부 선관위원들이 결정합니다.

- * 기표란에 기표되고 기호란, 후보자 성명란에도 기표한 것
- * 기표한 것이 투표용지를 접는 과정에서 다른 후보자 기표란에 묻은 것이지만 식별할 수 있는 것
- * 투표용지 일부가 찢어졌거나, 찢어져 소실됐지만 나머지 부분으로 후보자 모두의 기표란을 확인할 수 있는 것
- * 구분선 상에 기표됐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것 (기호란, 성명란, 기표란을 모두 포함함)
- * 투표인이 기표란에 불펜 등으로 ○표 하였다가 착오를 발견하고 그 위에 겹쳐 기표용구로 기표한 것
- * 투표인이 지지한 후보자에게 기표한 후 다른 후보자의 기표란에는 필기구로 문자를 기재한 경우

○ 아래 예시의 경우는 확실히 무효표로 봅니다. 아래 예시 사항에 없거나 판단이 어려운 투표용지는 지역본부 선관위원들이 결정합니다.

- * 투표용지가 완전히 찢어져 정규의 투표용지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것
- * 테두리선에 맞물려 기표하여 어느 후보 란에 기표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는 경우
- * 투표소에서 안내·제공된 투표용구가 아닌 것으로 기표한 경우

현장투표의 결과 보고

금속노조(지역지부 동시) 선거의 투표결과 보고

- 지회별 후보자 득표현황을 서면으로는 정리하되, 유인물, 대자보, 신문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없습니다.
- 지부선관위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작성된 선거록과 개표록을 중앙선관위에 보고합니다(선거록, 개표록 - 선거관리 각종 서식 참조)

지회(분회 및 위원회) 선거의 투표결과 보고

○ 각 지회(분회 및 위원회 포함) 규칙 및 세칙이 정한 대로 합니다.

민주노총(지역본부 동시) 선거의 투표결과 보고

- 민주노총 선거의 투표결과 보고는 민주노총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가 합니다. **민주노총 지역본부 지침 및 요청사항**에 협조 바랍니다. 단, **이래의 경우, 해당 투표소의 투표에 대한 유·무효기권 처리 기준이 있음을 사전에 인지바랍니다** 이중, 무효 처리 총 숫자가 민주노총 선거 당락에 영향을 미칠 경우 11/30(목) ~ 12/4(월) 사이에 해당 투표소만 재투표가 이뤄지니, 유의바랍니다.

투표함이 정상적으로 봉인·봉쇄되어 있지 않거나 분실된 경우

- ① 투표함의 보관·이송 과정에서 투표함 덮개의 봉인상태가 명백히 훼손된 경우 투표함을 전부 무효로 봅니다. ※ 단, 투표소에서 투표함 봉인용 스티커 부착단계에서 오류·흡결이 발생하였으나, 단순한 착오·과실에 의한 경미한 경우, 투표함의 이송·보관 과정에서 투표함이 부분적으로 손상되었다라도 투표함의 봉인·봉쇄상태가 훼손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로 봅니다.
- ② 투표함이 분실된 경우, 위 봉인훼손 투표함과 동일하게 무표로 봅니다.

선거인명부 서명자보다 투표함에 투입된 투표용지가 더 많은 경우

- ① 출력 선거인명부에 '임의기재되어 서명한 숫자'가 개표 시 '**임의등재**'로 기록돼 무효 처리됩니다.
- ② 서명자보다 투표용지를 더 교부하거나 교부용지보다 투표함 내 투표용지가 더 많은 경우 '**용지초과**'로 판단 간주되어 개표시 자동으로 '용지초과'로 계산되어 역시 무효로 반영됩니다.

선거인명부 서명부가 미회수되었거나 분실되었을 경우

- ① 선거인명부 자체가 미회수 또는 분실되었을 경우 투표소 전체를 (무효가 아닌) 기권 처리합니다.
- ② 회수된 선거인명부를 위법 선거인명부로 의결할 경우 투표소 전체를 기권 처리합니다. ※ 단, 대리서명이 다수 포함된 선거인명부 위법성 판단은 반드시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을 통합니다.
- ③ 선거인명부 중 일부가 미회수 또는 분실된 경우 미회수 및 분실된 부분에 한해서 재적인원 전체를 기권 처리하고 나머지를 정상개표 진행합니다. ※ 단, 투표함 개함 후 용지초과 처리합니다.

선거인명부가 둘 이상일 경우

- ① 하나의 투표소에 둘 이상의 정규 선거인명부가 있을 경우 정상 개표됩니다. ※ 단, 임의등재자 수를 확인합니다.
- ② 정규 선거인명부와 더불어 보조적으로 현장 자체 선거인명부를 사용한 경우도 정상 개표됩니다. ※ 단, 정규 선거인명부와 보조 선거인명부의 명단 및 선거인수가 일치할 경우에 한합니다.

당선인의 결정

금속노조 선거관리규정

※ 지부 임원선거 관련 규정은 선거관리규정 78, 79, 80, 83조 참고.

제43조(당선인 결정)

1. 당선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2.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때는 입후보자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다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3차 투표로 최다득표자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단, 후보가 2인 이하일 경우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을 때 최다득표자에 대해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3. 복수를 선출하는 부위원장 선거는 선출 인원수만큼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연기명투표로 하되 선출정원 미만의 기표도 유효표로 한다. 단, 후보가 선출정원 이내이면 각각에 대해 찬·반 투표 한다.
4. 부위원장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과반당선자가 선출정원에 미달 시 다득표순으로 미선출정원수의 후보에 대해 2차 찬·반 투표를 한다.
5. 위 1항, 2항에도 당선자가 없을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동반 출마한 조합원은 재등록할 수 없다.
6.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서면으로 당선통지를 하고 당선인의 성명을 공고한다.

제44조(재선거)

1. 다음 각호에 해당한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 ① 법원으로부터 선거 전부 무효의 판정이 있을 때
 - ②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되었을 때
 - ③ 제43조 4항에 의거 당선인이 없을 경우
 - ④ 제48조 2항 1호, 2호, 3항의 단서 조항에 의해 당선이 무효 된 경우
2. 위 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선거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한다. 이 경우 선거 절차는 당초 선거 절차에 의한다.

제45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1. 조합 임원(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선거의 경우 일부 지부, 지회의 선거 무효로 인한 선거의 일부무효 판결이 있을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지부의 재투표를 명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해야 한다. 단,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재투표하지 않고 무효처리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는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제48조(이의신청의 처리)

1. 투표 및 개표 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 등이 투표 및 개표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써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2.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은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① 선거무효
- ② 당선무효
- ③ 경고 처분

3.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한다. 단, 이의신청기간과 관계없이 본 규정 제31조 2항, 5항과 관련된 것은 당선 이후에도 당선이 무효 된다.

금속노조 선거의 당선인 결정

- 단수를 선출하는 위-수-사와 소수자 할당 부위원장 선거는 투표율이 50%를 넘고, 투표자 수 대비 과반을 득표하면 당선인이 결정됩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입후보자가 3인 이상이면 최다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해 2차 투표를 실시합니다. 2차 투표에서도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다득표자에 대한 찬반을 묻는 3차 투표를 실시합니다. 후보자가 3차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하지 못하면 재선거를 실시합니다. 재선거 시에는 선거관리규정 43조 5항에 따라 동반 출마자가 재등록할 수 없습니다.
- 복수를 선출하는 부위원장 선거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선출정원을 초과하면 다득표순으로 선출정원만큼만 당선인이 결정됩니다. 과반 득표자가 선출정원 미만인 경우 과반 득표자는 당선이 확정되며, 과반 미만을 득표한 후보 중 다득표 순으로 미선출 정원수의 후보에 대해서만 2차 찬반투표를 실시함. 2차 찬반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하는 후보는 당선인이 되며, 과반 미만 득표를 한 후보는 최종 낙선 처리됩니다.
- 선거관리규정 45조에 따라 조합 임원 선거에서 일부 투표소의 선거무효 상황이 발생한 경우 무효표가 당락에 영향을 미치면 재투표를 명해 당선인을 결정해야 합니다. 당락에 영향이 없으면 재투표 없이 무효로 처리합니다.
- 투표 결과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되면 선관위는 서면으로 당선인에게 당선통지를 하며, 투표 결과와 함께 당선인 결정 공고를 시행합니다.

금속노조 선거의 이의 신청

- 투개표 과정에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선관위는 이의신청 접수 7일 이내에 선거무효, 당선무효, 경고 처분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선거무효는 문제가 발생한 해당 단위에 한해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거관리규정 45조에 따릅니다. 전체 선거를 무효로 결정하면 재선거를 실시합니다. 선거무효, 당선무효 처분은 당선인 결정 공고 이후라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이의 신청 기간(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이 지나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되, 선거관리규정 31조 2항(사용자의 지원을 받거나 개입을 유도하는 행위), 5항(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하면 당선 이후에도 선관위 의결로 당선 무효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 선거의 일부재투표 제도

- 민주노총 지역본부의 현장투표 개표 과정에서 일반적 무효표와는 별개로, 투표함이 정상적으로 봉인·봉쇄돼 있지 않은 경우와 선거인명부에 임의로 추가된 선거인이 있는 경우, 투표록 또는 선거인명부보다 투표함에 투입된 투표용지가 더 많은 경우 등으로 인해 무효 처리된 숫자가 민주노총 임원 또는 지역본부 임원 당락에 영향을 미칠 경우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 의결로 11/30(목) ~ 12/4(월) 18:00까지 해당 투표소에 한한 재투표를 공고합니다.
- 민주노총 임원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특정 지역본부 임원 당락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재투표 공고도 민주노총 중앙선거관위가 직접 합니다.
 - * 이 때 일부재투표는 현장투표에서 모바일 투표로 전환하여 실시할 수 있음. 이는 민주노총 지역본부와의 협의 사항임. 단 휴대전화번호 등록자에 한함.
 - * 민주노총 중앙선거관위가 공지한 일정 내에 현장투표 재개가 불가능하다고 민주노총 지역본부 선거관위에 통지하는 단위조직(또는 투표구)은 해당 투표소의 재투표 참정권을 기권한 것으로 간주함.
 - * 일부재투표 공고는 11월 28일(화)~29일(수) 중 의결하여 11월 29일(수) 내에 공고되며 현장의 일부 재투표일은 공고된 날짜 중 하루(1일)에 한함.

민주노총 선거의 결선투표제

- 민주노총 임원 또는 민주노총지역본부 임원 당선자가 나오지 않은 경우 해당 선거구에 대한 결선투표가 진행됩니다. 결선투표 일정은 현장투표 투표용지 제작 → 지역배부 → 현장배부 시간을 감안하여 12월10일(일)~12월 14일(목) _ 5일 간으로 정하여 공고합니다.
- 특정 지역본부 만의 결선투표가 실시되는 경우에도 지역본부선거관위가 아니라 민주노총 중앙선거관위가 직접 공고합니다.
- 민주노총 중앙선거관위의 결선투표 일정공고는, 연장투표 또는 일부재투표 공고와 함께 공고됩니다. 단, 결선투표의 문항(찬반, 또는 1~2위 문항)은 연장투표와 일부재투표의 개표가 완료되자마자 추가 공고됩니다.
 - * 민주노총의 결선투표는 투표율 과반을 전제로 하지 않음.
 - * 민주노총 중앙선거관위가 공지한 일정 내에 현장투표 재개가 불가능하다고 통지하는 단위조직(또는 투표구)은 모바일투표로 전환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함. 단, 휴대전화번호 제출자에 한함. 이는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협의할 사항임.

부록 : 금속노조 선거관리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 규약 제38조에 의거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직접 선출하는 조합 임원(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지부 임원(지부장, 수석 부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 지회 임원, 각 대의원(조합대의원, 지부 대의원, 지회 대의원)과 간접 선출하는 조합의 각급 감사위원을 공정히 선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본 규정은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조합 임원과 지부 임원, 지회 임원, 대의원(조합대의원, 지부 대의원, 지회 대의원), 간접 선출하는 각급 감사위원 선거에 적용한다. 단, 지회 임원 및 지회 대의원의 경우 각 지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조합규약과 선거관리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조합규약과 선거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3조(선거관리) 본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는 특별한 규정 사항이 없는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 관리한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지부 선거관리위원회, 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활동을 정지한 경우는 중앙집행위원회(지부 운영위원회)가 한다.

제4조(선거인의 정의) 본 규정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써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5조(선거사무의 협조) 조합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해야 하며 선거사무에 대한 비용은 각급 단위에서 부담한다.

제6조(선거일 및 공고)

1. 각급 대표자의 선거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보궐선거의 경우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선거일은 아래와 같이 공고하여야 한다.
 - ① 직접 선출하는 조합 및 지부 임원은 30일 이전에 각각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및 지부 선거관리위원장인 한다.
 - ② 보궐선거의 경우는 각급 단위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다.

제 2 장 선거관리

제1절 선거관리위원회

제7조(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사무의 공정한 집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7인 이내
2. 지부 선거관리위원회 : 7인 이내
3. 지회 선거관리위원회 : 지회의 규모에 따라 지회에서 선출하고 지부 선관위원회를 거쳐 중앙선관위원회에 그 명단을 통보한다.

제8조(선거관리위원의 구성) 각급 선거관리위원은 조합원 중에서 다음 절차에 의하여 구성한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지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지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지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지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지회 규칙에 따라 선출한다.

제9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1.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반 선거사무를 총괄하고 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2.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선거사무를 담당한다.

제10조(직무)

1.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입후보자의 등록, 자격요건심사 및 사퇴 수리에 관한 사항
 - ② 선거인명부 작성
 - ③ 참관인 신청 등록
 - ④ 투·개표의 관리
 - ⑤ 선거운동 관리
 - ⑥ 선거공보의 발행
 - ⑦ 선거홍보물의 등록
 - ⑧ 합동연설회의 개최
 - ⑨ 선거록 작성 보고
 - ⑩ 당선인 확정 통보
 - ⑪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선거관리 기간 중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집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토요일, 일요일은 휴일로 한다. 단, 직접 선출인 경우 투표 기간은 투표개시일 오전 06시 30분부터 시작하여 투표 마지막 날 17시까지로 한다.
3. 직접 선출하는 조합 임원 및 지부 임원의 투표 기간은 5일 내로 한다.
4. 각급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1조(임기와 결원 보충)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위원회에서 선출됨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되며 차기 직접 선출 임원선거 후 중앙위원회에서 재구성되기 전까지로 한다.
2.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는 차기 지부 선거관리위원이 구성되기 전까지로 한다.
3.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중앙 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 또는 유고 시에는 중앙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재호선한다.
5. 중앙선거관리위원이 사퇴한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에서 보궐하고 지부 선거관리위원이 사퇴한 경우는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보궐한다.

6. 지부 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 또는 유고 시에는 지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재호선한다.

제12조(활동보장) 중앙 선거관리위원이 선출된 지부, 지회는 임원 동시선거 기간동안 (선거 공고일~3차 투표 마감 다음날) 중앙 선거관리위원의 임시상근을 보장하도록 적극 협조한다.

제2절 선거사무

제13조(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 및 입후보 등록 절차 공고)

1.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확정 즉시 회의를 소집, 선거사무에 관한 필요한 제반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서식 1호, 서식 1-1호, 서식 1-2호)
2. 입후보자 등록사무는 선거공고 익일부터 개시한다.
3. 직접 선출하는 조합, 지부, 지회 임원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입후보등록 시 조합경력소개 서류에 후보 등록 개시일로부터 이전 10년간 정권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력을 포함하여야 하고 각급 단위 선거관리위원회는 자료형 선거공보물에 이를 표기하여야 한다.

제3절 선거인명부

제14조(선거권)

1. 조합비를 체납한 조합원의 경우는 후보 등록 마감 48시간 전까지 조합비를 납부한 경우에 한 해 선거권을 부여한다.
2. 조합비가 가압류되거나 체불된 경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으로 조합 임원 및 지부 임원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선거권 제한)

1. 최초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조합원일지라도 선거인명부 최종확정일 기준으로 조합비를 2개월 이상 미납했을 경우, 징계로 인해 권리가 제한된 경우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선거공고일 이후 가입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으며, 선거공고일 전 30일 이내에 가입한 신규조합원은 선거인명부 최종확정일을 기준으로 1회의 조합비를 납부해야 선거권이 부여된다.

제16조(피선거권의 제한) 규약에 따라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1. 조합 임원이 연임(2회)한 뒤, 지부 임원이 재연임(3회)한 뒤 연속해서 해당 단위에 임원으로 출마하는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단, 2015년 9월 선거부터 적용) 단, 지부 감사위원의 지속적 연임에 한해 피선거권 제한을 두지 않되 지부 규정에 따른다.
2. 중앙위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대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참하였을 경우 단, 해당 단위의 차기 선거에 한한다.
3. 조합비 2개월 이상 미납
4. 징계처분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중지된 경우
5. 징계처분 시 자격정지가 병과된 경우
6. 조합원은 동일 기수 조합·지부·지회 임원선거(재선거·보궐 선거·보충선거 포함)에 중복하여 출마할 수 없다.
7. 임원은(조합, 지부, 지회) 당선 이후 6개월 동안 특별한 사유 없이 조합에서 결정한 의무교육을 이수

- 하지 않을 경우 차기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단, 차기 임원선거(조합, 지부, 지회)에 한한다.
8. 임기 중 소속사업장 기준으로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사업장에 소속되지 않은 조합원은 법정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단, 사업장 단체협약으로 정년 후 임기를 보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7조(선거인명부 작성)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 임원 및 지부 임원선거의 경우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인명부(서식 제2호)를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 마감일로부터 48시간 이전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8조(선거인명부 열람 및 수정)

1.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2. 명부의 열람은 투표 전일까지 하되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3. 선거인명부 중 착오 또는 누락 사항을 지적한 조합원이 있을 시 즉시 확인하여 정당하게 수정하여야 하며 이의제기는 투표 개시 시간으로부터 48시간 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단, 이의제기 시한을 중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절 선거관리 규정 해석

제19조(지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를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20조(선거관리 규정 이외 사항에 대한 해석권)

1. 선거관리 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한 해석 및 판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이 우선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을 무시한 하급 선거관리위원회 및 당사자의 행위는 무효이다.
2. 1항을 적용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활동이 중지된 상태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해석권을 갖되 중앙위원회에서 반복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제 3 장 조합 임원의 선출

제1절 입후보자

제21조(입후보자 등록) 조합의 임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조합원은 필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하는 입후보 등록신청서(서식 제3호)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조합원의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하는 조합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에 동반 입후보(러닝메이트)하려는 조합원과 부위원장 후보에 입후보하려는 조합원은 선거공고 후 10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이 조합 임원에 입후보할 때는 선거공고 후 3일 이내에 사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등록요건을 갖추었을 때 즉시 등록필증(서식 제4호)을 교부해야 한다.
4. 조합원은 조합 임원으로 입후보할 경우 지부 임원선거에 동시 입후보할 수 없다.
5.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1통, 조합 활동 경력소개 1통이다.

제22조(입후보자의 공고)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하였을 때는 서류심사 후 소속, 성명, 성별, 연령, 조합 경력 등을 등록 마감 다음 날부터 공고하여야 한다. (서식 제5호)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 입후보등록 후 동반 출마하는 후보 중 결원 또는 유고 발생 시 등록 무효로 처리한다.

제23조(보완지시 불응에 대한 처리)

1. 입후보 등록신청서가 관계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등록 3일 이내에 명하고 명한 날로부터 24시간 이내 시정 또는 보완되지 않을 경우 입후보 자격이 상실된다.
2. 제31조(금지사항)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에게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통보하고 유인물을 통해 공식 사과토록 해야 하며 주의를 준다.
3. 위 2항의 명령을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고를 주고, 그 사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조합원에게 공개한다. (공개방식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4. 경고 처분을 받은 입후보자가 추가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후보자 자격상실을 의결할 수 있다.

제2절 선거운동

제24조(선거운동 기간)

1. 선거운동 기간은 입후보자 등록 기간을 마감한 시간부터 투표 전일까지로 하고 조합은 입후보자가 합법적 선거운동을 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제1항의 선거운동 기간 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입후보를 위한 사전준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5조(선거공보)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 임원선거에 입후보한 조합원의 기호, 사진, 성명, 주소, 연령, 경력 및 공약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후보별 동일 규격으로 선거운동 기간 중 공고형과 자료형으로 2종을 발행·배부하여야 한다.
2. 조합 임원선거 입후보자는 제1항의 공고형 및 자료형 공보 편집완성 파일을 후보등록 마감 시간 후 48시간 이내에 그 원고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선거공보에 게재할 후보자에 기호는 추첨하여 결정한다.

제26조(홍보물)

1. 후보자는 개인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단, 홍보물의 종류 및 배포 횟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입후보자들의 의견을 받아 결정한다.
2. 개인 홍보물에는 허위사실이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3. 조합원 누구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홍보물 외 선거 관련 홍보물은 제작·배포할 수 없다.

제27조(합동연설회)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 임원 입후보자의 합동연설회를 지부 단위로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 일시, 장소, 연설 시간을 공고하고 후보자에게 통지

- 하여야 한다.
3. 합동연설회에서 연설통서는 연설회마다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4. 후보자가 합동연설회 개최 시마다 1인에 한하여 찬조 연설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찬조 연설은 모든 후보자의 연설이 끝난 뒤 실시하며 통서는 당해 후보의 연설통서에 따른다. 찬조연설자의 자격은 조합원으로 한다.
 5. 후보자가 찬조연설자를 두는 경우 그 명단을 합동연설회 개최 전날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후보자 또는 찬조연설자가 타 후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 또는 중상모략하는 내용을 발표할 때는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그 요구에 불응할 때는 연설을 중지시켜야 한다.

제28조(개인 연설회 제한)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개인 연설회를 개최할 수 없다.

제29조(입후보자 방문 선거운동) 조합 임원선거 입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은 산하 조직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원 등록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한 이유로 이를 금지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각 단위 선출직 임원은 선거운동원 등록을 금지한다.

제30조(선거비용의 공영제) 직접 선출하는 조합 임원의 선거 활동에 필요한 선거비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편성하고 중앙위원회에서 승인하며, 선거공영제를 원칙으로 한다.

제31조(금지사항) 선거운동 기간 중 입후보자 또는 조합원들이 선거에 관하여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사용자의 지원을 받거나 개입을 유도하는 행위.
3. 폭력, 협박, 납치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4.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5.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등을 약속하는 행위.
6.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 중상모략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7. 기타 규약이나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제3절 투표

제32조(투표 방법)

1. 투표는 직접, 비밀, 무기명으로 한다.
2. 현장투표와 온라인(ARS투표, 모바일) 투표, 우편투표를 병행할 수 있다.
3. 온라인(ARS, 모바일) 투표, 부재자투표를 제외한 우편투표의 경우,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제33조(투표장소 및 시간)

1. 투표는 지부별, 각 지부 선거구별로 실시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장소를 결정한다.
2. 직접 선출하는 조합 임원의 투표 기간은 5일 이내로 하며, 투표개시일 06시 30분에 시작하여 투표

마감일 17시로 한다.

3. 투표를 개시하는 때는 선거관리위원 및 투표참관인이 투표함 및 기표소 내·외의 이상유·무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34조(부재자투표)

1. 부재자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을 받아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2. 위 1항의 필요에 따라 부재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하는 조합원의 투표는 소속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 조합원에게 선거일 7일 전까지 도착하도록 투표용지와 선거공보 등을 등기로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 조합원은 기표실시 후 즉시 투표용지를 소속 지부로 반송하여야 한다.

제35조(투표용지)

1. 투표용지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인쇄하여야 한다. (서식 제6호) 단,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찬·반 투표용지로 대신 할 수 있다.
2.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3. 투표용지의 수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조합원 수와 동일하여야 한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투표용지를 선거 후보 등록 마감 즉시 제작하여 늦어도 선거일 10일 전까지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제36조(투표참관인)

1. 투표참관인은 각 투표소마다 입후보자가 추천한 1명에 한하며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투표를 참관할 수 있다. 단, 투표참관인이 없는 경우 소속 지부를 달리하는 조합원 1인을 투표참관인으로 입회시킬 수 있다.
2.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참관인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즉시 투표참관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서식 제7호)

제37조(투표함의 확인) 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투표참관인에게 확인, 봉인한 후 투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38조(투표 절차)

1. 투표인은 투표참관인의 입회하에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관리위원 앞에서 선거인명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한 뒤 투표용지를 교부받는다.
2. 투표인은 필요한 투표용지를 교부받고 각각 지정된 기표 도구로 기표한다.

제39조(온라인(ARS, 모바일) 투표)

1. 온라인(ARS, 모바일) 투표 대상 선거인은 선거인 명부에 기재된 휴대전화기로 걸려 온 전화 또는 문자를 받아, 투표 안내에 따라 투표한다.
2. 온라인(ARS, 모바일) 투표 안내의 발신, 투표방법 등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4절 개표

제40조(개표관리)

1. 개표관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을 받아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2. 개표할 때에는 투표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다.
3.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종료되는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종료 결과를 보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개표를 실시해야 한다.

제41조(무효투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투표로 간주한다.

1.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인 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후보자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 포함)
4. 지정된 기표 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문형을 기입한 것
5.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제42조(투표 결과 보고)

1.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서식 제8호)
2.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투표용지 및 선거록을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지부별로 봉인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항의 보고를 받고 즉시 후보자별 득표수를 계산, 공표하여야 한다. 이때 중앙선관위는 선거구별 득표수를 함께 발표해야 한다.

제43조(당선인 결정)

1. 당선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2.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때는 입후보자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다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3차 투표로 최다득표자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단, 후보가 2인 이하일 경우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을 때 최다득표자에 대해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3. 복수를 선출하는 부위원장 선거는 선출 인원수만큼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연기명투표로 하되 선출정원 미만의 기표도 유효표로 한다. 단, 후보가 선출정원 이내이면 각각에 대해 찬·반 투표 한다.
4. 부위원장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과반당선자가 선출정원에 미달 시 다득표순으로 미선출 정원수의 후보에 대해 2차 찬·반 투표를 한다.
5. 위 1항, 2항에도 당선자가 없을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동반 출마한 조합원은 재등록할 수 없다.
6.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서면으로 당선통지를 하고 당선인의 성명을 공고한다. (서식 제9호)

제5절 재선거, 보궐 선거

제44조(재선거)

1. 다음 각호에 해당한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 ① 법원으로부터 선거 전부 무효의 판정이 있을 때
 - ②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되었을 때
 - ③ 제43조 4항에 의거 당선인이 없을 경우
 - ④ 제48조 2항 1호, 2호, 3항의 단서 조항에 의해 당선이 무효 된 경우
2. 위 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선거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한다. 이 경우 선거 절차는 당초 선거 절차에 의한다.

제45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1. 조합 임원(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선거의 경우 일부 지부, 지회의 선거무효로 인한 선거의 일부무효 판결이 있을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지부의 재투표를 명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해야 한다. 단,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재투표하지 않고 무효처리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는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제46조(보궐 선거)

1. 보궐 선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2. 보궐 선거의 공고 기간은 조합, 지부 임원선거의 경우 15일을 최소로 한다.
3. 입후보등록 기간은 공고 후 5일까지로 한다.
4. 보궐 선거의 투표 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제47조(보충선거)

1. 조합 임원선거 시 입후보자가 없어 선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보충선거를 할 수 있다.
2. 보충선거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확정한다.
3. 보충선거의 공고 기간은 20일을 최소로 한다.
4. 입후보 등록 기간은 공고 후 5일까지로 한다.
5. 투표 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제6절 이의신청

제48조(이의신청의 처리)

1. 투표 및 개표 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 등이 투표 및 개표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써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2.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은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① 선거무효
 - ② 당선무효
 - ③ 경고 처분
3.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한다. 단, 이의신청기간과 관계없이 본 규정 제 31조 2항, 5항과 관련된 것은 당선 이후에도 당선이 무효 된다.

제49조(제재) 각급 선거관리위원 및 선거종사자가 고의로 공정한 선거관리를 지연, 방해하거나 본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을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제재를 취하여야 한다.

제 4 장 지부 임원선거

제1절 입후보

제58조(입후보자 등록) 지부 임원(지부장, 수석부지부장, 사무국장[리닝메이트], 부지부장[개별출마])에 입후보하려는 조합원은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하는 입후보등록신청서(서식 제3-1호)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항에 의거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지부 임원에 입후보하려는 조합원은 선거공고 후 10일 이내에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이 지부 임원에 입후보할 때는 선거공고 후 3일 이내에 사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 입후보자가 입후보 등록요건을 갖추었을 때 즉시 등록필증(서식 제4-1호)을 교부해야 한다.
4. 조합원은 지부 임원에 입후보할 경우 본조, 지회 임원선거에 동시 입후보할 수 없다.
5.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1통, 조합 활동 경력소개 1통이다.

제59조(입후보자의 공고)

1.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하였을 때는 서류심사 후 소속, 성명, 성별, 연령, 조합경력 등을 등록마감 다음 날부터 공고하여야 한다. (서식 제5-1호)
2.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 입후보등록 후 동반 출마하는 후보 중 결원 또는 유고 발생 시 등록 무효로 처리한다.

제60조(보완지시 불응에 대한 처리)

1. 입후보 등록신청서가 관계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등록 3일 이내에 명하고 명한 날로부터 24시간 이내 시정 또는 보완되지 않을 경우 임원 입후보 자격이 상실된다.
2. 제68조(금지사항)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 입후보자에게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통보하고 유인물을 통해 공식 사과토록 해야 하며 주의를 준다.
3. 위 2항의 명령을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고를 주고 그 사실을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조합원에게 공개한다. (공개방식 등은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4. 경고 처분을 받은 지부 임원 입후보자가 추가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후보자 자격상실을 의결할 수 있다.

제2절 선거운동

제61조(선거운동 기간)

1. 선거운동 기간은 입후보자 등록 기간을 마감한 시간부터 투표 전일까지로 하고 지부는 입후보자가 합법적 선거운동을 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제1항의 선거운동 기간 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입후보를 위한 사전준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62조(선거공보)

1.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부 임원에 입후보한 조합원의 기호, 사진, 성명, 주소, 연령, 경력 및 공약 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후보별 동일 규격으로 선거운동 기간 중 공고형과 자료형으로 2종을 발행, 배부하여야 한다.
2. 지부 임원선거 입후보자는 제1항의 공고형 및 자료형 공보 편집완성 파일을 후보등록 마감 시간 후 48시간 이내에 그 원고를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선거공보에 게재할 후보자 기호는 추천하여 결정한다.

제63조(홍보물)

1. 후보자는 개인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단, 홍보물의 종류 및 배포 횟수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들의 의견을 받아 결정한다.
2. 개인 홍보물에는 허위사실이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3. 조합원 누구라도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홍보물 외 선거 관련 홍보물을 제작, 배포할 수 없다.

제64조(합동연설회)

1.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부 임원 입후보자의 합동연설회를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2.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일시, 장소, 연설 시간을 공고하고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합동연설회에서 연설순서는 연설회마다 추천에 의하여 결정한다.
4. 후보자가 합동연설회 개최 시마다 1인에 한하여 찬조 연설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찬조 연설은 모든 후보자의 연설이 끝난 뒤 실시하며 순서는 당해 후보의 연설순서에 따른다. 찬조연설자의 자격은 조합원으로 한다.
5. 후보자가 찬조연설자를 두는 경우 그 명단을 합동연설회 개최 전날까지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또는 찬조연설자가 타 후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 또는 중상모략하는 내용을 발표할 때는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그 요구에 불응할 때는 연설을 중지시켜야 한다.

제65조(개인 연설회 제한)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개인 연설회를 개최할 수 없다.

제66조(입후보자 방문 선거운동) 지부 임원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은 산하 조직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원 등록에 대해서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단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한 이유로 이를 금지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각 단위 선출직 임원은 선거운동원 등록을 금한다.

제67조(선거비용의 공영제) 직접 선출하는 지부 임원 후보자의 선거 활동에 필요한 선거비용은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선거공영제를 원칙으로 한다.

제68조(금지사항) 선거운동 기간 중 입후보자 또는 조합원들이 선거에 관하여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사용자의 지원을 받거나 개입을 유도하는 행위
3. 폭력, 협박, 납치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4.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5.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등을 약속하는 행위
6.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 중상모략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7. 기타 규약이나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제3절 투표

제69조(투표장소 및 시간)

1. 투표는 선거구별로 실시하며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장소를 결정한다.
2. 지부 임원의 투표 기간은 5일 이내로 하며, 투표개시일 06시 30분에 시작하여 투표 마감일 17시로 한다.
3. 투표를 개시하는 때는 선거관리위원 및 투표참관인이 투표함 및 기표소 내·외의 이상유·무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70조(부재자투표)

1. 부재자투표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한다.
2. 위 1항의 필요에 따라 부재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하는 조합원의 투표는 소속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 조합원에게 선거일 7일 전까지 도착하도록 투표용지와 선거공보 등을 등기로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 조합원은 기표 실시 후 즉시 투표용지를 소속 지부로 반송하여야 한다.

제71조(투표용지)

1. 투표용지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인쇄하여야 한다. (서식 제6-1호) 단,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찬·반 투표용지로 대신 할 수 있다.
2.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3. 투표용지의 수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조합원 수와 동일하여야 한다.

제72조(투표참관인)

1. 투표참관인은 각 투표소마다 후보자가 추천한 1명에 한하며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투표를 참관할 수 있다.
2.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참관인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즉시 투표참관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서식 제7-1호)

제73조(투표함의 확인) 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투표참관인에게 확인, 봉인한 후 투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74조(투표 절차)

1. 투표인은 투표참관인의 입회하에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관리위원 앞에서 선거인명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한 뒤 투표용지를 교부받는다.
2. 투표인은 필요한 투표용지를 교부받고 각각 지정된 기표 도구로 기표한다.

제4절 개표

제75조(개표관리)

1. 개표관리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2. 개표할 때에는 투표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다.

3.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종료되는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개표를 실시해야 한다.

제76조(무효투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투표로 간주한다.

1.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인 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후보자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 포함)
4. 지정된 기표 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문형을 기입한 것
5.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제77조(투표 결과 보고)

1.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투표용지 및 선거록을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봉인하여 보관한다.
2.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별 득표수를 선거구별로 계산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서식 제8-1호)

제78조(당선인 결정)

1. 당선은 지부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2.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때는 입후보자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다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3차 투표로 최다득표자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단, 후보가 2인일 경우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을 때 최다득표자에 대해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3. 복수를 선출하는 부지부장이 1차 투표에서 과반당선자가 선출정원에 미달 시 다득표순으로 부족한 인원수에 대해 2차로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4. 위 1항, 2항에도 당선자가 없을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5.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서면으로 당선통지를 하고 당선인의 성명을 공고한다. (서식 제9-1호)

제5절 재선거, 보궐 선거

제79조(재선거)

1. 다음 각호에 해당한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 ① 법원으로부터 선거 전부 무효의 판정이 있을 때.
 - ②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되었을 때.
 - ③ 제78조 4항에 의거 당선인이 없을 경우.
 - ④ 제83조 2항 1호, 2호, 3항의 단서 조항에 의해 당선이 무효된 경우.
2. 위 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선거일은 지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한다. 이 경우 선거 절차는 당초 선거 절차에 의한다.

제80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1. 지부 임원선거의 경우 일부 선거구의 선거무효로 인한 선거의 일부무효 판결이 있을 때에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구의 재투표를 명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해야 한다. 단,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재투표하지 않고 무효처리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는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제81조(보궐 선거)

1. 보궐 선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2. 보궐 선거의 공고 기간은 지부 임원선거의 경우 15일을 최소로 한다.
3. 입후보 등록 기간은 공고 후 5일까지로 한다.
4. 투표 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제82조(보충선거)

1. 지부 임원선거 시 입후보자가 없어 선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보충선거를 할 수 있다.
2. 보충선거일은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다.
3. 보충선거의 공고 기간은 15일을 최소로 한다.
4. 입후보 등록 기간은 공고 후 5일까지로 한다.
5. 투표 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제6절 이의신청

제83조(이의신청의 처리)

1. 투표 및 개표 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 등이 투표 및 개표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써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2.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은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① 선거무효
 - ② 당선무효
 - ③ 경고 처분
3.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한다. 단, 이의신청기간과 관계없이 본 규정 제 68조 2항, 5항과 관련된 것은 당선 이후에도 당선이 무효 된다.

제84조(제재) 지부 선거관리위원 및 선거종사자가 고의로 공정한 선거관리를 지연, 방해하거나 본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을 때에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제재를 취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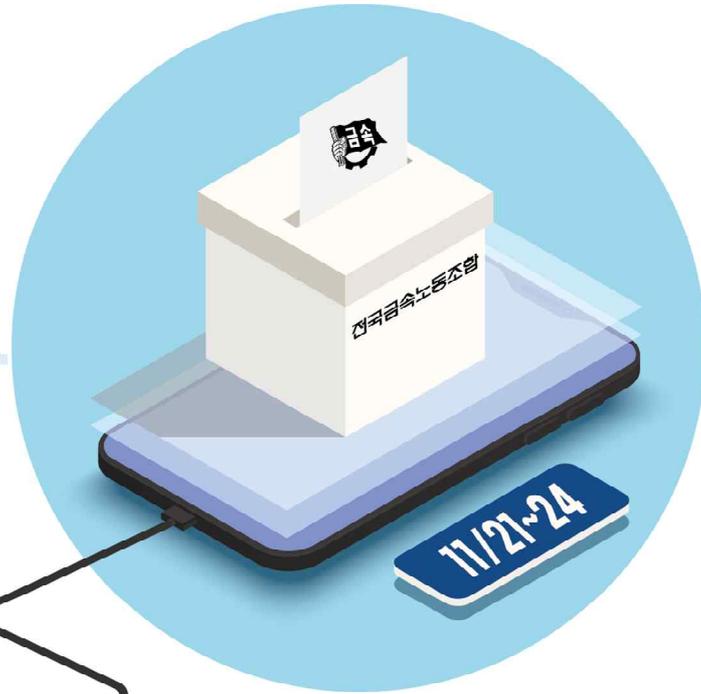
부 칙

제1조(시행) 본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석) 본 규정의 미비점은 통상관례에 의하되 다툼의 소지가 있을 때는 중앙선관위 해석이 우선한다.

제4조(선거일 및 공고 예외) 규약 부칙 14조(조직편제 방안에 대한 경과규정)에 의거한 기업지부의 선거일 및 공고는 동 규정 6조 적용에서 예외로 할 수 있다.

금속노조 13기 동시선거-민주노총 2023년 직선



 **전국금속노동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소 서울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6층, 금속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vote.kmwu.kr **이메일** kmwuelec@gmail.com

전화 02-732-2318 **팩스** 02-732-2319

명부등록확인 1522-2220 (10/31~11/10)